



# 아름다운재단

---

##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

### 임팩트

---

#### 책임연구원

**조소연**(사회복지연구소 마:실 공동대표)

#### 공동연구원

**김수영**(사회복지연구소 마:실 공동대표)

**손선옥**(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 연구수행기관

사회복지연구소 **마:실**은 '마음을 나누는 실천을 고민하고 나누는 실천가이자 연구자 모임'입니다.

마:실에서는 강점관점을 토대로 한 맞춤형 교육과 워크숍, 현장 수퍼비전과 연구를 진행합니다.

(<http://blog.naver.com/2015masil>)



# 목차

지원사업 임팩트	63
1. 연구 배경과 목적	63
2. 연구 방법과 절차	64
3. 자립준비청년의 개념과 특성	65
1) 자립준비청년의 개념	65
2) 자립준비청년의 수	66
3) 자립준비청년의 특성	67
4.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현황과 쟁점	69
1)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내용	69
2)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범위	76
3)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운영	78
5.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성과 분석	82
1)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내용	82
2)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범위	84
3)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운영	84
6. 자립준비청년 사업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 분석	86
1) 연구 개요	86
2) 연구 결과	86
7.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업 방향 제안	104
1) 남이 하지 않은 일, 남이 가지 않은 길	104
2) 가족, 타인과 함께하는 자립	104
3) 경계를 넘나들기	106

# 지원사업 임팩트

## 1. 연구 배경과 목적

아동복지 영역에서 자립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은 주제다. ‘보호종료아동’, ‘시설보호퇴소아동’ 등으로 불리던 이들은 최근 자립의 주체성을 반영하고, 시설퇴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재고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으로 재명명되었다. 정책적으로는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칭하면서 자립준비를 ‘혼자 버티는’ 시간에서 국가와 사회가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급격히 확대되었는데, 특히 과거에는 자립지원의 대부분을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공공의 지원책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근래 발생한 시설퇴소 청년의 자살 사건이나,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의 증가, 정서적인 고립과 외로움 문제가 보도되어 사회적 문제의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적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자립지원에 대한 합의가 모색될 수 있었던 근간에는 수십 년간 지속된 민간의 활동과 문제 제기가 있었다. 즉, 정부의 자립지원 정책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민간의 꾸준한 노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아름다운재단은 민간에서조차 자립지원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2000년부터 가정외보호아동의 퇴소 후 자립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지만, 당시의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에서는 가정외보호아동 문제에 거의 초점을 두지 않았다. 2000년 「아동복지법」을 전부개정하면서 법 목표에 모든 아동의 복지를 보장함을 명시하였지만, 이 법의 개정 목적은 개정이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었고, 법의 내용도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 유형을 규정하거나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법에서 자립에 대한 언급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서 자립지원시설을 정의한 것 외에는 없었으며, 자립지원과 관련된 예산 지원이나 서비스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으로 시작된 아름다운재단의 자립지원사업은 선도적이며 실험적인 도전이었으며, 다른 민간기관과 정부의 정책과 서비스를 견인한 사업이었다. 아름다운재단 자립지원사업의 임팩트를 살펴보는 것은 단지 재단 자체의 성과를 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업 전반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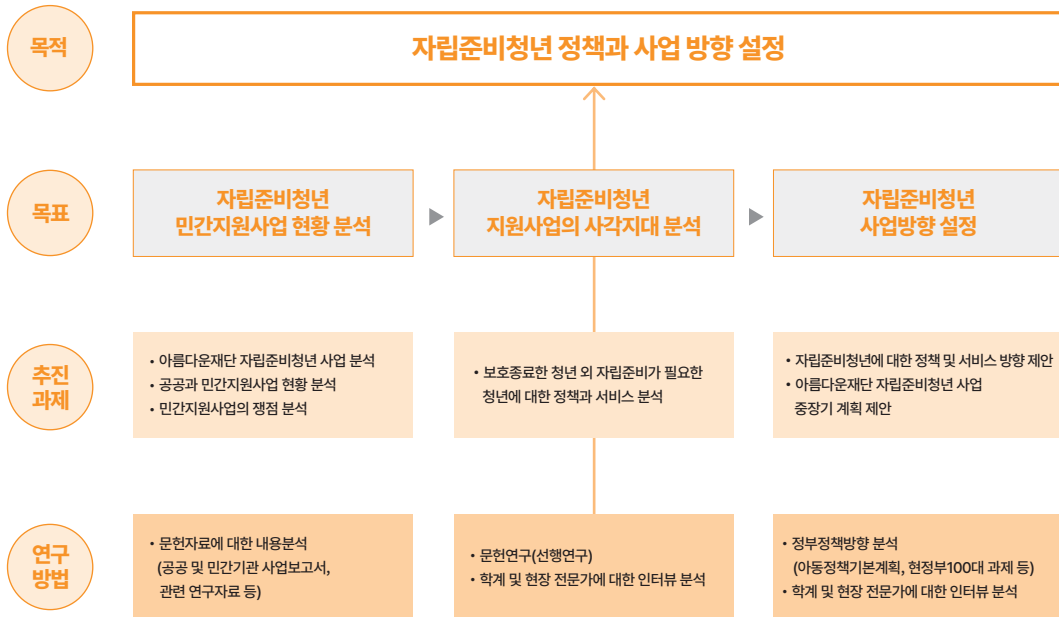
이에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 변화와 민간 지원 변화를 토대로 아름다운재단 자립지원사업의 임팩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와 민간에서 진행하는 자립지원사업의 제도적, 실천적 쟁점을 먼저 분석하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 아름다운재단 자립지원사업의 위치와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PartI과 PartII가 시간성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었다면, 본 장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유형과 방법, 지원 대상, 지원주체별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즉, 현행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중 ‘하고 있는 것’과 ‘하고 있지 않은 것’, ‘넘치는 것’과 ‘부족한 것’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위치를 점검하였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사업방향에 대한 학계와 현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현행 자립준비청년 정책 및 서비스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과 민간 자립지원의 역동을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탐색하여 양자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히,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사업의 중장기 비전과 미션을 수립하기 위한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방법과 절차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질적연구를 활용하였다. 첫째, 자립에 대한 문헌 자료를 살펴보고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자립지원의 유형과 방법, 지원 대상, 지원주체별 특성과 쟁점을 파악하였다. 여기에는 자립준비청년 정책 및 서비스 현황 분석과 아름다운재단 자립지원사업 성과 분석을 포함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사업 방향을 분석하였다. 인터뷰는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온 학계 전문가와 자립지원사업을 실천해 온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동보호체계와 관련한 내용뿐 아니라, 청소년보호체계와 소년보호체계 등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세 영역에서 자립연구와 실천을 해온 사람을 연구 참여자로 섭외하였다. 질적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과정에 대해서는 해당 장에서 기술하였다. 셋째, 문헌연구와 질적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자립준비청년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아름다운재단에서 추진할 사업의 방향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전반적인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절차와 방법



### 3. 자립준비청년의 개념과 특성

#### 1) 자립준비청년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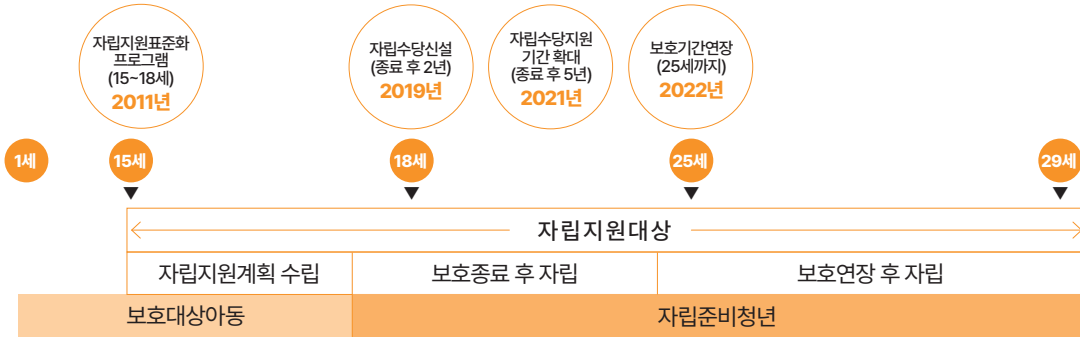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제3조). 현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없으나, 통상 보호대상아동으로서의 보호종결 후 자립지원의 대상이 된 사람을 뜻한다. 「아동복지법」에는 제38조 ‘자립지원’, 제39조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2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제40조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규정이 있으며, 보호가 종결된 자에 대한 지원은 이 규정을 따른다.

관련 지침에는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데,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과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사람’이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3a). 또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25세 전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람도 포함된다. 보호기간 연장은 장애, 질병, 지적 능력의 부족, 고등교육기관 재학, 취업준비 등 시행령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아동복지법시행령」제22조).

그리고 법률상 15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매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되어있다(「아동복지법」제39조). 따라서 자립지원의 공식적 대상은 15세 이상부터 18세 미만까지의 보호대상아동과 18세가 지나 보호종결 후 자립지원의 대상이 된 사람을 뜻한다. 그리고 보호연장된 사람의 자립지원은 보호연장이 종결된 시점에서 시작하므로, 24세까지 보호연장을 하고 25세부터 5년간 자립지원을 받는 경우를 고려하면, 자립지원의 최대 기한은 15세부터 29세까지라고 할 수 있다. 이중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의 사람을 말한다. 과거에는 이를 ‘보호종료아동’, ‘자립아동’ 등으로 불렀으나,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아동’ 호칭이 부적절하므로 최근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칭하고 자립지원사업 안내나 정부의 공식문서에서도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즉, 연령을 중심으로 보면, 자립준비청년은 18세부터 29세까지이며, 기간으로는 보호종결 후 5년간을 뜻한다.

시대별로 자립지원 대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은 보호 중인 아동에 국한하여 자립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었으나, 2019년 보호종료된 자에 대한 자립수당을 신설하면서 자립지원의 대상이 보호종결 후 2년까지로 확대되었다. 이후 ‘자립수당’의 지원 연한을 중심으로 자립지원의 연령 범위도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자립수당의 지급기간은 2020년 3년에서 2021년 5년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2021년에는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보호종료 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원대상의 호칭을 변경하였으며,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6조의3).

[그림 2] 자립준비청년의 범위



자립지원대상의 연령 범위 확대는 실질적으로 자립이 이루어지는 청년기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2023년 9월 22일 공포)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청년지원’과 ‘청년정책’, ‘취약계층 청년’의 개념을 명시한 바, 이에 따른 개념과 지원책의 중복에 대한 점검과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 2) 자립준비청년의 수

연평균 약 2,000명의 청년이 보호종료되어 자립을 시작한다. 2022년을 기준으로 자립지원의 대상인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사람은 11,403명이며, 보호유형별로는 가정위탁이 6,263명으로 가장 많고, 아동양육시설 4,327명, 공동생활가정 813명 순이다. 이 수치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을 단순 산출한 숫자이며, 실제로 자립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의 수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과거에는 가정외보호아동의 퇴소 후 상황을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하였고, 아동보호체계가 개편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립된 현 상황에서도 자립 이행을 확인할 주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보호종결시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관여하고 있고<sup>1)</sup>, 보호종결 후 자립은 시군구별로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보호종결 전 거주지와 종결 후 거주지가 다를 경우 이들에 대한 정보가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 상황에서는 자립수당 수급을 중심으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호가 종결된 청년들 중에는 자립수당 자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 역시 일부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이다.

지난 5년간 자립준비청년의 수(연령도래에 따른 보호종결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아동 수의 감소, 보호대상 아동의 감소와 연쇄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아동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생각하면 자립준비청년의 수는 향후에도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국회입법처, 2023), 원가정 복귀를 우선하는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도 18세 연령 도래 전 중간 퇴소하는 아동의 수도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립지원에 관한 논의는 양적 확대보다 ‘질’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1) 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없는 그룹홈의 경우에는 그룹홈 종사자가 자립지원업무를 담당한다.

**<표 1> 자립준비청년의 수 (2018~2022년)**

연도	(단위: 명)			
	합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2018	2,606	1,065	192	1,349
2019	2,587	992	172	1,423
2020	2,368	827	168	1,373
2021	2,102	726	157	1,219
2022	1,740	717	124	899
<b>보호종료 5년 이내</b>	<b>11,403</b>	<b>4,327</b>	<b>813</b>	<b>6,263</b>

출처: 국회입법처, 2023.

한편, 보호시설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논의와 법안 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보호의 사례는 많지 않다. 가정위탁의 경우에는 연장보호율이 77.8%에 이르지만,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된 경우 전체의 33.9%, 그룹홈의 경우 28.7%에 불과하다(사회보장정보원, 2022). 이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의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어서라기보다, 성년이 되어 시설을 벗어나 독립된 공간에서 살기 원하는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있어서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성인으로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더 보장하는 차원의 '청년 친화적' 접근책을 마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2> 2021년 자립준비청년 연장종료 현황**

종료사유	(단위: 명, %)			
	전체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만기퇴소	863(41.1)	271(22.2)	480(66.1)	112(71.3)
<b>연장종료</b>	<b>1,239(58.9)</b>	<b>948(77.8)</b>	<b>246(33.9)</b>	<b>45(28.7)</b>
<b>전체</b>	<b>2,102(100)</b>	<b>1,219(100)</b>	<b>726(100)</b>	<b>157(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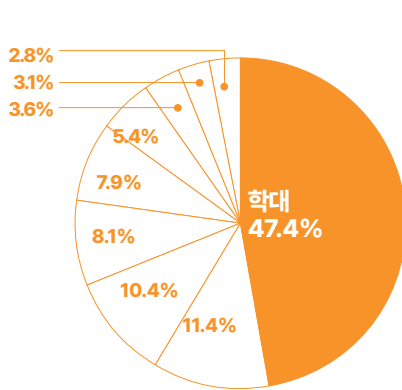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2022.

### 3) 자립준비청년의 특성

아동의 보호조치 발생 원인을 살펴볼 때, 전체 인원의 약 47%가 아동학대로 보호조치되었으며, 다음은 부모의 이혼(11.4%), 미혼부모 및 혼외자(1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로 유추해 볼 때, 부모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면 자립준비청년의 대부분은 원가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2021년 보호조치아동 발생 원인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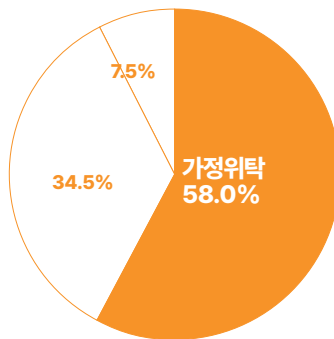
구분	수(명)	비율(%)
학대	1,733	47.4
부모 이혼 등	417	11.4
미혼부모 및 혼외자	379	10.4
부모 사망	297	8.1
비행 가출 불량	289	7.9
부모 빈곤 및 실직	198	5.4
유기	130	3.6
부모 질병	113	3.1
부모 교정시설 입소	101	2.8
<b>전체</b>	<b>3,657</b>	<b>100</b>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2022.

자립준비청년 중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 중에서도 손자녀를 양육하는 대리 가정위탁과 친인척 가정위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 중에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양육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소원한 경우가 있으며, 원가족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있는 경우도 많다.

<표 4> 2021년 보호유형별 자립준비청년 수

(단위: 명, %)



구분	수(명)	비율(%)
가정위탁	1,219	58.0
아동양육시설	726	34.5
그룹홈	157	7.5
<b>전체</b>	<b>2,102</b>	<b>100</b>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2022.

자립준비청년 중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경우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의 자립 양상은 다를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은 '홀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친인척을 포함한 원가족과 함께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원가정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 기간부터 원가정에서 받은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과 원가정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김선숙 외, 2020; 사회보장정보원, 2022).

한편, 보호조치아동의 발생원인 중 부모 사망이나 유기로 친생부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중 유기아동은 주로 베이비박스를 통해 유기된 아동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베이비박스 아동의 경우 자기 뿌리를 알 수 없음에 따른 정체성 혼란과 유전적 정보의 상실, 사적 자원의 부재로 원가족이 있는 아동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베이비박스가 민간에 의해 설치된 2009년 이후 14년이 지난 현재,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중 중학생이 된 경우가 있으며, 이제 자립지원 대상으로 진입할 베이비박스 아동이 많아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 4.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현황과 쟁점

### 1)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내용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심리지원, 사회적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분야별로 살펴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생계 지원

먼저 공공의 생계지원을 살펴보면, 보호종료 후 일시로 받을 수 있는 지원과 매월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다. 일시 지원은 자립정착금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이 있으며,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정착금과 보호기간에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적립한 금액을 수령한다. 자립정착금은 과거에는 약 500만 원 수준이었으나, 2023년 정부는 1,000만 원 이상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고 최근 서울, 대전, 경기, 제주는 1천5백만 원까지 증액하고 그 외 지역은 1천만 원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는 보호기간에 적립 금액에 따라 국가에서 후원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통장으로, 개별 적립액과 국가 후원금을 1:2 비율(국가적립금 최대 10만 원)로 적립할 수 있다. 만약 아동이 5만 원을 적립한다면 10만 원을 지원하여 월 15만 원씩 적립이 가능하다. 이 금액은 18세부터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 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등 특정 자립 용도로 인출이 가능하며, 만 24세가 되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자립준비청년이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계좌 적립금도 아동마다 편차가 매우 크다.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매월 받을 수 있는 지원에는 자립수당이 있다.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수당을 매월 4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2019년 시범적 운영 후, 지급 기간과 금액이 지속해서 확대되었으며, 2021년 8월부터 지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고, 월 30만 원으로 시작된 지급액은 2023년 1월부터는 월 4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2024년부터 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시 소득과 재산 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수급 자격을 완화하였다. 보호종료 후 5년간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공제(6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하며, 자립정착금은 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이 수급권을 얻게 되면, 2023년을 기준으로 1인가구의 경우 60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민간의 생계지원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많고, 자립정착금과 같이 일시로 목돈을 지원하는 것과 대응자금을 하는 적립이 있다. 대표적으로 아름다운재단에서는 2021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협력하여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청년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생활 안정금과 자립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 지원금은 별도의 선별 체계를 두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공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고 민간 지원기관 간에 지원 대상에 관한 정보 교환이 어려우므로 지원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자립준비청년이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의 최대 금액을 계산하면 공공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만 5년간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산출된다. 이는 지자체별 자립정착금의 최대 금액 2,500만 원, 1세부터 18세까지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약 3,200만 원(15만 원×216개월), 월별 자립수당 3,000만 원(2024년부터 증액분 50만 원×60개월), 수급권 대상이 되었을 경우 1인가구 생계비 약 3,900만 원(2023년 기준 약 65만 원×60개월)을 더한 금액이다.

물론, 이는 잠재적으로 수급 가능한 최대 금액을 기계적으로 환산한 것일 뿐이며, 자립준비청년이 이 금액을 모두 받기는 현

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자료가 자립준비청년에게 현금 지원이 충분하므로 지원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자립준비청년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의 편차가 너무나 크다는 점이다. 어떤 청년은 5년간 1억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청년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제도가 있어도 여러 조건을 배제하고 나면 실제로 지원 신청이 되지 못하는 때도 있다. 민간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찾는 정보력과 지원서 작성 역량이 갖춰져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많아서, 정보를 알아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청년도 있다. 이와 관련한 사각지대와 지원 한계에 대한 문제는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 (2) 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수급권을 얻으면,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자립준비청년 중 의료급여 대상이 아닐지라도 보호종료 후 5년간은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sup>2)</sup>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의료비 보장도 일부 확인이 된다. 일례로 한화생명의 함께멀리 기부특약은 의료비 보장을 위해 보험을 지원하는 형태이며, 현대차정몽구재단에서는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 (3) 주거 지원

자립준비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주거지원은 ‘LH건설임대주택 자립준비청년 지원’, ‘청년 전세임대주택’,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희망디딤센터’,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이 있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LH전세임대 무상 지원 기간을 2023년 하반기부터 20세에서 22세로 연장하기도 했다. LH상담센터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전용 주거 상담 서비스인 ‘유스타트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3). 한편, 청소년쉼터의 퇴소 청년은 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하고 퇴소한 18세 이상인 경우 매입임대주택과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5.4.).

그러나 법적으로는 ‘자립준비청년’으로 명명된 청년 외의 사람은 대부분 주거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다. 법령을 살펴보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숙인 등을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그러나 이 법률의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주거약자는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청소년은 주거약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나 민간에서는 세어하우스나 자립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공급량이 매우 적은 편이다. 또한, 민간에서는 월세나 주택임주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를 확보한 후에 필요한 부분이라 주거 자체를 구하지 못한 청년은 여전히 노숙 위기 상황에 놓여있게 된다.

## (4) 교육 지원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국가의 교육 지원은 주로 대학 진학과 관련한 것들이 많다. 먼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권장 대상 및 우선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은 국가장학금 선발 시 성적 기준을 제외하였다. 또한, 대학 기회균형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은 1차 병원 외래 1,000원, 2·3차 병원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약국 이용 500원 수준이다.

교육 지원은 민간 부문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다양한 재단에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름다운재단도 대학생교육지원사업을 오랜 기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장학금은 대학생에게 한정 지원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그동안 생활비와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어왔다.

국가는 장학금 제공 외에 자립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기도 한다. 14세 이상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시설이나 그룹홈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개별적인 꿈을 이루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선호와 진로를 먼저 탐색하고 그에 맞는 자격 취득이나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어학이나 예체능, 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이 프로그램은 장학금 지원사업이나 생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자립준비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금융교육인데,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자산 형성과 지출관리, 투자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 (5) 취업 지원

취업 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창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한 정도다(정선옥 외, 2019). 자립준비청년을 위해서는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 전담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립준비청년이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5개월의 도약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00만 원의 도약준비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민간 영역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기술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지원, 그리고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정규직 채용 연계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SKT나 스위트코리아 신세계 면세점 등은 정규직 채용을 연계하고 있고, 아름다운가게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함께만드는세상 등은 인턴십 프로그램에 우선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 (6) 심리 지원

심리 지원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3개월간 10회기의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개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총 8회기 이루어진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마음건강지원사업의 1순위로 선발하며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이는 보편적 청년지원사업 중 하나이지만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최근, 자립준비청년의 우울함이나 자살 시도, 자살 생각 등 심리적 어려움이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심리 지원과 관련한 사업은 매우 적은 편이다.

### (7)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정부는 2022년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였고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자립준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하고 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기본적으로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연 1회 상담을 실시하여 자립 수준과 생활 상태, 지원 필요성을 점검하며, 집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활, 주거, 진학, 취업, 의료 등 전 분야에 걸친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또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3b). 하지만, 자립지원전담인력 1인당 담당 청년 수가 약 70명 정도로 현실적으로 자립지원을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23년에는 자립전담인력을 2023년 180명까지 확대하고 처우 개선을 약속하였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되어 보호아동에 대한 방문 교육 및 멘토링 등을 수행하는 ‘바람개비서포터즈’를 운영하고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바람개비서포터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지역별로 조직, 운영한다. 바람개비서포터즈는 멘토링뿐만 아니라 자립준비청년 간 자조모임 기능도 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연결망이 취약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 지역마다 보호대상아동이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임별로 20명 내외의 구성원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sup>3)</sup>

민간에서도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사업들은 보통 자조모임 자체를 지원하기보다 생계지원이나 취업지원, 혹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당사자 모임을 구축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현대차정몽구재단의 경우 ‘온드림 청년사회진출(청사진)’이라는 통합자립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사업은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자립 교육과 자기 계발 지원으로 구성하고 정서적 지지를 위해 자립선배 및 전문가를 연계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강현주·홍나미·박주혜, 2019). 아름다운재단도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모임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모임인 ‘자립준비청년협회’에서도 자립교육과 자조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표 5> 국내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현황**

	공공영역	민간영역 <sup>4)</sup>	아름다운재단
생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발달지원계좌 (월10만 원 한도 추가적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적십자사] 청약저축통장 납입액 지원</li> <li>• [신한은행] 적금 매칭 펀드</li> <li>• [아름다운가게] 적금지원금</li> <li>• [청년의뜰] 저축 시 매칭 펀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정착금 (1,000~1,500만 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손해보험] 희망의장검다리(자립정착금)</li> <li>• [KRX국민행복재단] 생활안정지원금</li> <li>• [기아대책] 자립키트 지원, 사랑의 김장나눔</li> <li>• [아름다운가게] 자립지원금</li> <li>•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살림구매 지원</li> <li>• [현대중공업1%나눔재단] 보호종료준비아동 자립준비지원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종료 후 자립수당 (월 40만 원)</li> <li>* 청소년쉼터 자립지원수당 (매월 40만 원씩 최대 36개월)</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약 60만 원)</li> <li>*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시 보호연장 기간부터 보호종료 후 5년간 근로사업소득 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강태원복지재단] 식재료 지원</li> <li>• [KB손해보험] 런런챌린지(생계비)</li> <li>• [아모레퍼시픽] 아침의릴레이(긴급생계비)</li> <li>• [우체국공익재단] 청년밥심스타트온(식비)</li> <li>• [포스코1%나눔재단] DoDream (생활지원금)</li> <li>• [한화생명] 긴급생활비, 비상금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생활안정 지원사업</li> </ul>

3)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조모임은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청년모임’,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청년들의 걱정 없는 하루(청하)’와 ‘그린나래(보호대상아동)’,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찬솔(보호대상아동)’ 등이 있다(박주혜·홍나미·강현주, 2022).

4) 본 표에서 공공 영역은 국가의 자립지원 제도와 정부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 영역은 국가지원이 없는 비영리기관과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정의함. 이에 따라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같이 지지체가 민간에 위탁한 기관은 본래의 정의상 ‘민간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공 영역에 포함하였음. 민간 영역의 경우 자금 지원처를 중심으로 기재하고, 자금 지원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업주체를 명시하였음.

	공공영역	민간영역 <sup>4)</sup>	아름다운재단
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급여 : 5년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본인부담금 경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아동복지협회] 의료비 지원</li> <li>[한화생명] 함께멀리기부특약 (의료비보장보험 지원)</li> <li>[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청사진 (건강검진 지원, 실비보험가입)</li> </ul>	
주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임대(무상임대 및 우선공급)</li> <li>* 청소년쉼터 퇴소 후 5년 이내</li> <li>(지자체별) 세어하우스 및 자립지원주택 제공 사업</li> <li>주거지원통합서비스 (주거지원, 환경조성, 사례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B손해보험] 세어하우스, 월세지원</li> <li>[사무금융우분투재단] 주거지원</li> <li>[삼성전자] 생활관 및 자립체험관</li> <li>[서민주택금융재단] 주택무이자대출, 주택지원</li> <li>[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입주지원금</li> <li>[이랜드복지재단] 주거환경 개선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안정지원사업</li> <li>청소년부모주거 지원사업</li> <li>노숙위기청년주거 지원사업</li> </ul>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장학금 우선지원 권장 및 우선선발</li> <li>대학특례입학(2024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BK기업은행] 장학금</li> <li>[IBK행복나눔재단] IBK희망나래 장학금</li> <li>[S-Oil] S-Oil Dream장학금</li> <li>[교보교육재단] 희망다솜장학금</li> <li>[지파운데이션] 같이가치 비전장학금</li> <li>[포니정재단] 발돋움장학사업</li> <li>[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기부장학금</li> <li>[현대백화점] 파랑새꿈꾸는날개짓 (교육비, 진로장학금)</li> <li>[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청사진(장학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생교육비 지원사업</li> <li>청년배움지원사업 (대학비·진학 또는 진학 후 중단 청년)</li> </ul>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SBC코리아] 청소년비전지원사업</li> <li>[Marcus AI Academy] 인공지능 교육</li> <li>[YBM] 어학수강권 지원</li> <li>[공무원연금공단] 멘토링 지원사업</li> <li>[나눔과이음] 자립지원 법교육</li> <li>[사회연대은행] 예체능분야 멘토링 지원</li> <li>[사회연대은행] 자산형성지원(저축+보험), 하이투자챌린지</li> <li>[지오이드] LIFE 금융교육</li> <li>[카카오뱅크] 금융교육</li> <li>[한화생명] 청년꿈 지원사업</li> <li>[현대차증권] 찾아가는 경제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자립정착꿈 지원사업</li> <li>청년배움지원사업</li> <li>청년경제교육 지원사업</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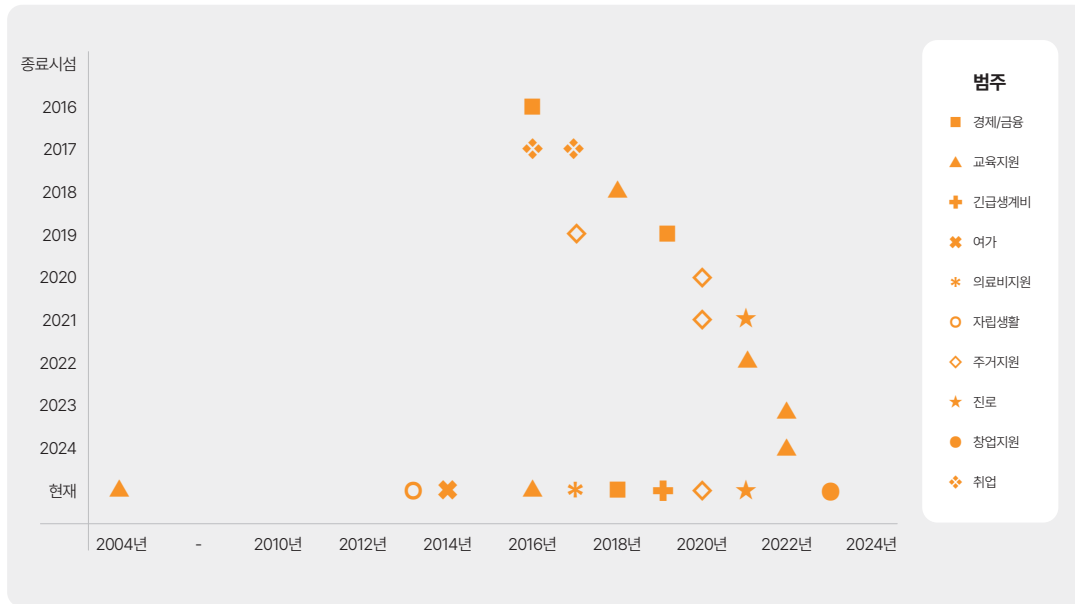
	공공영역	민간영역 <sup>4)</sup>	아름다운재단
<b>취업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선 지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J도너스캠프] 꿈키움아카데미</li> <li>• [KB손해보험] 기술교육 및 컨설팅</li> <li>• [KT그룹희망나눔재단] 자격증 지원</li> <li>• [SKT] 정규직 취업 연계</li> <li>• [두나무] 창업지원, 자립준비청년 고용기업지원</li> <li>• [드림텍, 유니퀘스트] 이공계열 지원사업</li> <li>• [매트라이프재단] 자립준비 교육비</li> <li>• [삼성전자] 취업연계 교육</li> <li>• [스위프트코리아] 정규직 취업 연계</li> <li>• [신세계면세점] 정규직 취업 연계</li> <li>• [아름다운가게] 청년인턴십사업</li> <li>•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스무살함께서기 (취업컨설팅, 일경험)</li> <li>• [이랜드복지재단] 면접복 키트 지원</li> <li>• [포스코1%나눔재단] 취업성공수당</li> <li>• [한국관광공사] 호텔분야 취업연계</li> <li>•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입문과정 교육</li> <li>• [한국타이어] 호텔분야 취업연계</li> <li>• [함께만드는세상] 인턴십 프로그램</li> <li>• [함께일하는재단] 희망디딤돌청년 직무교육</li> <li>• [현대중공업1%나눔재단] 중공업 기술교육 및 취업연계사업</li> </ul>	
<b>심리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우선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청사진 (숲속힐링교실, 멘토링)</li> </ul>	
<b>사회적 (정보)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람개비서포터즈’ 자조모임 운영 및 활동비 지원</li> <li>• (지역별) 가정위탁지원센터 자조모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아대책] 자립준비청년 커뮤니티 운영</li> <li>• [청년재단] 새싹청년의 꿈을 이루는 멘토링</li> <li>•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청사진(멘토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커뮤니티 활동지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지원 플랫폼 운영: 자립정보ON(보건복지부), 자립해냄 모바일 앱(여성가족부)</li> </ul>		

\* 본 자료는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자립지원사업안내(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3a) 및 자립지원활동가이드북(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3b),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자립정보ON(아동권리보장원) 게시물, 한국아동복지협회 게시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리하였으며,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음.

현재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지원 내용을 정리하면, 생계 지원과 의료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심리 지원, 사회적 지원의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영역의 경우 과거에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이 부재하거나 절대적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최근 양적으로 지원 규모가 급격히 늘었으며, 이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공의 지원은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등 현금 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에만 머물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

민간 영역의 경우에는 현금 지원 외에도 교육과 멘토링, 문화 활동, 취업 지원 등의 사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민간의 지원사업 시작 연도를 살펴보면(그림3), 2001년 아름다운재단에서 대학생교육비지원을 시작했고 2004년에는 교보장학재단에서 장학금사업을 시작했다. 2014년 삼성전자와 현대차정몽구재단이 자립청년에 대한 주거지원(희망디딤돌)과 여가 지원사업(온드림숲속힐링교실)을 운영하였다. 이 네 가지 사업은 민간의 자립준비청년사업의 중심축을 이루면서 현재까지도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아동자립지원단과 한국아동복지협회,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등 아동보호 업무를 하는 단체들이 운영 주체가 되어 기업의 후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2019년은 자립 지원 사업에 전환이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4월 보호종료 후 홀로 지내던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다.<sup>5)</sup> 국가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자립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민간에서도 자립지원금과 생계비 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의 사업이 급격히 늘어났다.<sup>6)</sup>

[그림 3] 연도별 민간 지원 영역



민간의 사업은 단발성으로 진행되거나 주제나 내용이 바뀌는 등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도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민간은 늘 공공보다 한발 앞서서 자립준비청년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자립준비청년사업을 견인해 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재단이나 아름다운가게, 포스코1%나눔재단, 현대차정몽구재단 등은 단일 사업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계,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통합 사업을 오랜 기간 제공해왔으며, 이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방향을 선도해 온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재단이나 후원 기업 고유의 특성에 맞춘 사업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기업도 사업 홍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저축 대응 자금을 지원하고, YBM은 어학 수강권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연대은행의 경우 저축과 보험, 투자 등에 대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카카오뱅크는 금융 교육을 하고 있다.

5)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자립준비청년은 13명이었다(국민일보, 2022.12.4).  
 6) <그림3>은 앞 장 ‘자립지원 시기별 주요 특성’ 파트에서 제시한 34개 민간지원사업을 분석한 것이다.



자립준비를 위해 필요한 지원의 내용과 형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다양한 영역에 걸친 지원책이 마련되어 이용자가 필요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들은 그 자체로도 효과가 있지만, 각 지원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상승작용을 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즉, 생계 지원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교육의 연계, 교육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게 하는 방안, 교육이나 취업 지원 사업과 멘토링, 자조모임을 연결하여 심리적,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지원사업의 안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선택과 실행을 관리·지원하는 지원체계 마련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2)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범위

자립지원에 대한 논의는 주로 아동보호체계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외에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쉼터, 「소년법」에 따른 소년원 등을 떠나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상당수이다. 2021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은 2,102명이며, 조기 종료된 아동은 연 733명이고 이 중 원가정 복귀가 708명이다.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보호체계에서 18세 이후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연 1,100명 수준이다. 법무부 감독 하의 소년원 퇴소 인원은 연 1,588명이며,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의 정원은 연 180여 명 수준이다.

이들의 입소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아동기에 가정 밖에서 보호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원가정의 상황이 취약하다는 점도 유사하다. 이들은 가정에서 학대받거나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도 많은 편이다(조소연·황혜신, 2023). 2019년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이 집을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폭력과 학대를 포함한, 이른바 ‘생존형 가출’이었으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방임형’과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다 이전한 ‘시설형’이 뒤를 이었다(허민숙, 2022). 가정 밖 청소년과 비행이나 범죄연루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에도 ‘보호자로부터 심하게 맞거나 신체적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70.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이정민·김수혜, 2020).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18.8%,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중 28.2%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것을 볼 때(김지연·백혜정·김미향, 2022), 이들이 매우 유사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되다가 ‘통고’되었을 경우, 청소년쉼터를 전전하다가 법무부 산하의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입소하는 사례도 있다.<sup>7)</sup> 소년법상 통고란,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보호관찰소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는 절차를 말한다(「소년법」 제4조제3항). 통고를 통해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구금 보호조치가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김희진, 2020), 일반 통고 대상은 주로 보호관찰 처분(4호, 5호)을 받았으나, 시설장이 통고한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장기 보호관찰 처분(5호)이나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6호)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이형섭·정선옥, 2016). 또한, 소년법상 처분 이후 아동복지시설에 재 복귀가 거부되는 사례도 있었는데(경향신문, 2019.7.22.; 최정규 외, 2018), 이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변경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떤 체계에서 보호되었든 이들의 환경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보호 전 상황뿐 아니라, 보호종료된 청년의 대부분은 자립 기반과 역량이 열악하여 안정적인 성인기 이행을 위한 국가의 자립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채무 비율만을 살

7) 「소년법」상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1~5호 처분은 ‘사회 내 처우’, 소년원에 송치하는 8~10호 처분은 ‘시설 내 처우’에 해당하며,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재판 후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없을 경우, 지역 내 개방된 시설에 수용해 주변 환경에서 분리시키면서도 일반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6~7호 처우를 ‘중간처우’라고 한다. 2023년 기준으로, 현재 전국 11개 아동보호치료시설 중 7곳을 6호 처분 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즉,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치료와 보호의 중복 목적이 있는 아동을 보호하면서, 6호 처분을 받은 아동을 수용하는 법무부 관할 시설이기도 하다.



펴보아도 일반 청년의 14.7%가 채무가 있지만, 시설퇴소청년은 36.2% 수준으로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 대학 진학률도 일반 청년이 75.8%, 시설퇴소청년이 61.2%로 낮은 수준이었다(김지연 외, 2022).

그러나 자립지원의 수준은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 소년보호체계 간에 격차가 매우 크다.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 종료된 청년에게 주어지는 대부분의 지원이 나머지 두 체계 청년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은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2024년부터 지급 예정)이 지원되지만, 신청 자격이 매우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청년이 거의 없다. 2021년의 경우 약 17명 정도가 수당을 받은 것을 보면, 기준선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전민경, 2021). 자립수당은 18세 이후 퇴소하고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고, 직전 6개월은 연속적으로 지원받은 청소년에게만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지급 기간도 3년간으로 짧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5.4.). 이는 청소년쉼터의 경우 가정 복귀, 소년원의 경우를 선도만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 즉, 청소년쉼터와 소년원을 벗어나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허민숙, 2022). 이마저도 중도에 타 시설로 전원되거나 보호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아동기에 시설 거주 경험이 없이 18세 이후에 발굴된 경우,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출소 후 법무부의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에서 자립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이었으나 원가정보 귀나 타법에 의한 시설에 입소하는 등 18세 이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경우는 대표적 사각지대이다(허민숙, 2018). 이 경우, 2023년 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립지원이 가능하게 하였지만(「아동복지법」제38조), 아직 구체적인 자립지원 대상 인정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아동보호체계 내에서도 서비스 유형에 따른 편차가 존재한다. 자립에 관한 전반적 지원 역할을 하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에만 배치되어 있고, 공동생활가정에는 없다.<sup>8)</sup>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시·도에 한두 명만 배치되어 있어, 위탁가정을 지원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인 아동일시보호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경우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없을 뿐 아니라, 자립에 대한 대부분의 정책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모든 아동은 서비스를 차이 없이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자립 지원 대상을 입·퇴소 이력과 관계없이 확대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2021년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란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이 법에 따른 자립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립지원의 기간도 문제다. 현재 자립지원은 대부분 보호종료 후에 이루어지고 보호기간에 지원하는 내용은 ‘자립지원표준 화프로그램’에 따른 자립 계획 수립과 생활, 진로 교육이 유일하다.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기간도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특수 욕구가 있거나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청년은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과 생활 문제, 자금 관리 문제, 범죄 노출 등이 증가하지만 이에 맞춘 연속적인 상담이나 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이고, 이러한 문제는 보호기간부터 개입이 시작되어 보호종료 후까지 장기간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8) 서울과 부산의 경우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자립지원 업무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 3)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운영

지역별로 자립 준비 환경은 매우 다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과 조례를 마련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0곳의 지자체에서 자립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자립지원 관련 조례의 내용은 대부분 자립정착금 지원에 관한 것과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에 관한 것이다. 과거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서울, 인천,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만 설치되어 있었지만(보건복지부, 2017), 2022년 이후 전국 17개 시도에 1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sup>9)</sup> 자립전담기관은 시도에 거주하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연1회 자립수준 평가를 시행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자립수준평가를 통해, 신체 및 정신적 건강, 학업, 취업, 주거, 경제, 사회적 관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다.

시도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되어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했지만, 자립지원의 질은 인력의 수와 전문성에 따라 좌우된다. 특히, 자립지원에서는 생애 초기 경험한 트라우마 경감을 위한 노력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자립준비를 지원할 전담인력의 충분한 배치는 중요하다(이상정 외, 2020b). 본 연구에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량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별 자립준비청년 수와 지역별 자립지원전담요원 수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표>와 같다. 먼저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1,820명) 서울시(1,508명), 전라남도(1,094명) 순이며, 경기도(26명)와 서울시(24명)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수도 많은 편이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자립준비청년 수는 많지만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수는 매우 적은 편으로 전담요원 1인당 담당 청년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요원 1인당 청년 수는 전남(136.8명), 제주(110.0명), 충북(94.6명) 순이었다. 한편, 통합사례관리 인원은 경기도(365명), 서울시(310명)와 부산시(175명) 순으로 많았다.

<표 6> 자립지원전담인력 1인당 담당 인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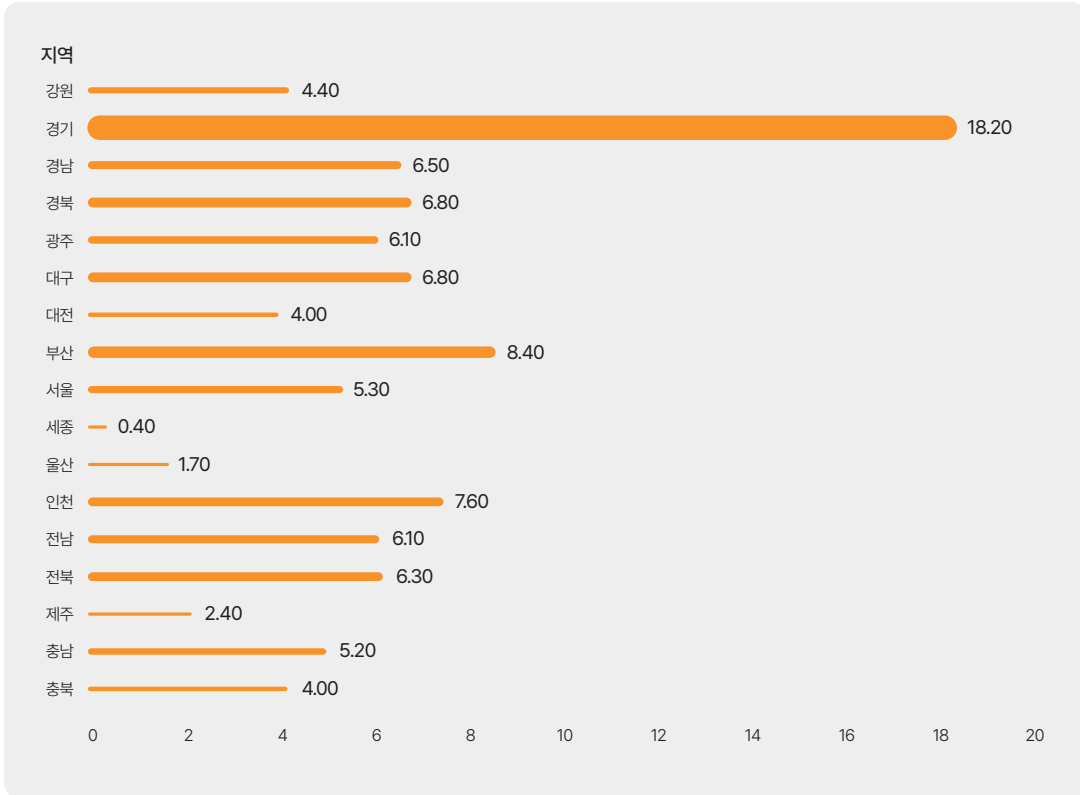
시도	정원	배치 현황	자립준비청년 수	통합사례관리 인원	인력 1인당 청년 수
서울	24	24	1,508	310	62.8
부산	16	14	910	175	65.0
대구	8	8	406	85	50.8
인천	10	10	487	105	48.7
광주	10	10	379	105	37.9
대전	7	6	307	80	51.2
울산	2	2	142	25	71.0
세종	2	1	13	5	13.0
경기	32	26	1,820	365	70.0
강원	10	8	757	110	94.6
충북	7	4	475	75	67.9
충남	8	6	512	85	85.3
전북	9	9	721	100	80.1
전남	11	8	1,094	115	136.8
경북	9	9	764	100	84.9
경남	12	11	888	125	80.7
제주	3	2	220	35	110.0
<b>계</b>	<b>180</b>	<b>161</b>	<b>11,403</b>	<b>2,000</b>	<b>70.8</b>

출처: 국회입법처(2023)

9) 광역자치단체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도는 2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 비율은 <그림4>와 같이 경기, 부산, 인천의 순으로 높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디딤씨앗통장은 보호가 종료된 이후, 자립을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지만,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10%도 안 되는 비율로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17개 시도별 디딤씨앗통장 지원 아동 비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2022.

지역별 자립지원의 격차는 당장 독립하여 살아가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지역별 차이뿐만 아니라 접근성의 차이도 문제가 된다. 즉, 공공과 민간의 지원이 확대되었으나, 자립준비청년들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적시에 얻지 못하는 어려움도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된 후 살던 시설이나 시설의 종사자, 지인 등과 연락을 단절한 경우에는 자립준비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공의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서비스가 개인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나 자립전담요원이 서비스 안내 또는 홍보를 해도 개인과 접촉되지 않을 때는 공급이 어려운 것이다. 민간의 자원을 획득하기는 더 어렵다. 민간의 자원이 다양하지만, 자원 자체를 찾기 어렵고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도 자신의 어려움을 크게 드러내야만 지원받기가 쉽다. 또한, 대부분 지원 결정이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진행되는데, 서류를 잘 작성하기 어렵거나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정이 쉽지 않다.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은 2023년 자립정보ON을 개설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자립정보ON에 등록된 사업은 총 271개였으며, 이 게시물들의 대상과 주체, 유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자립정보ON에 게시된 사업의 73%는 자립준비청년에 특정되어 있으며, 27%는 모든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의 정보도 포

함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업은 134개(53%), 민간기관의 사업은 150개(47%)이며, 사업의 내용은 법률, 소득, 진학, 건강, 금융, 주거, 취업 등 다양했다. 지원사업 중 가장 많은 것은 취업(84건, 31.0%)과 기타 영역(84건, 31.0%)이었는데, 기타 영역은 일회성 행사나 이벤트에 관한 내용이었다. 모든 게시물에서 지원금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현금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은 23개(8.5%)로 파악되었다. 조회수를 살펴보면 법률 정보에 대한 조회수가 225건(17.7%)으로 가장 많았고, 진학(179건, 14.0%), 금융(176건, 13.8%)에 관한 것이 뒤를 이었다.

자립정보ON은 아직 개설 초기이지만,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상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플랫폼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플랫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이다.

<표 7> 2023년 자립정보ON 게시물 현황

(단위: 건, %)

분류	게시글 수	조회 수
법률	3(1.1)	225(17.7)
소득	5(1.8)	150(11.8)
진학	20(7.4)	179(14.1)
건강	20(7.4)	140(11.0)
금융	26(9.6)	176(13.8)
주거	29(10.7)	123(9.7)
취업	84(31.0)	140(11.0)
기타	84(31.0)	141(11.1)
<b>계</b>	<b>271(100)</b>	<b>1,274(100)</b>

## 5. 아름다운재단 자립지원사업 성과 분석

아름다운재단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군자할머니기금’을 조성하고 2001년부터 보호종료아동의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 사업은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선정 인원이 총 770명이고, 총지원금은 3,334,893,633원에 이른다. 이후 십여 년간 등록금 지원 중심으로 사업하던 재단은 자립준비청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2014년부터 대학 생교육비지원사업을 개편하였다. 기존에는 1년간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었지만, 2014년부터는 최대 2년간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자립준비청년이 대학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등록금뿐 아니라 학업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자기 계발 등 다양한 배움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 교육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을 재설계 하였으며, 자립준비청년 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여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에는 자립준비청년 모임을 발전시켜 선배 장학생이 길잡이(멘토)가 되어 후배 장학생과 교류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름다운재단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의 변화를 정리하면 <표8>과 같다.

<표 8> 아름다운재단 연도별 교육 지원 내용

구분	학업유지 및 자기 계발 기회 제공
2001년~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li> </ul>
2014년~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2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1인 1,000만 원 한도)</li> <li>• 학업생활보조비 1인 100만 원 지원(학기당 50만 원)</li> <li>• 장학생 특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어학연수(1인 700만 원 지원)</li> <li>- 자기주도성 자기 계발 프로젝트(1인 최대 500만 원 한도)</li> </ul> </li> <li>※ 별도 선발(각 5명)</li> </ul>
2017년~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2년간 교육비(등록금, 자기계발비) 1인 320만 원 지원</li> <li>• 학업생활보조비 180만 원 지원</li> <li>• 작은변화프로젝트 : 전체 장학생 대상 주제별 팀모임 지원</li> <li>• 장학생 특전 : 해외어학연수(1인 약 1천 만원 지원)</li> <li>※ 별도선발</li> </ul>

또한, 재단은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였다. 2020년에는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을 시작하고, 2021년에는 ‘청년배움지원사업’과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러한 내용은 2022년의 ‘청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 외의 청소년에 대해서도 사업의 범위를 확장해, ‘가정밖청소년교육비지원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한편, 2013년에 자립준비청년이 사망한 사건은 재단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재단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생계 지원이 절실한 현실을 마주하며,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추진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열여덟어른자립정착금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효과성 연구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발전시켜, 2021년부터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2016년에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보호종결아동 주거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주거권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선진국 사례 조사를 통한 보

호종료아동 주거지원제도 동향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재단은 2019년부터는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사업과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에는 이를 노숙위기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확대하였다.

이처럼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지원사업의 성과를 사업의 내용과 범위, 운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내용

### (1) 선도적 자립지원 모델의 견인

아름다운재단은 자립지원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던 2001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퇴소 후 자립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는데, 당시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업이 주를 이루었고 가정 밖 보호아동 문제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으로 시작된 아름다운재단의 자립지원사업은 선도적이며 실험적인 도전이었으며, 다른 민간기관과 정부의 정책과 서비스를 견인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림 5] 공공과 민간의 주요 자립지원사업



특히, 장학금지원사업은 대학생의 학업 유지 및 자기 계발 기회 제공의 효과가 있었다. 아름다운재단의 대학생 교육비지원사업은 학업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자기 계발을 하고 진로결정 효능감을 높이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다.

“여유가 생겼죠. ‘아 한숨 났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는 게 너무 빠빡했거든요. 계속 일과 학교를 반복하니 공부도 집중이 안 되고 집에 오면 엄마랑 자주 싸웠어요. 교육비 지원을 받고 나서 한숨 놓게 되니까 부딪치는 일이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직장에서도 잘할 자신이 생겼어요.” (아름다운재단·아동자립지원단, 2015)

“돈 모으는 게 쉽진 않았어요. 책 한 권 사는 것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몇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강의도 1년짜리는 사본 적 없고요. 그런데 교육비 지원을 받으니 그게 가능한 거예요. 책을 마음껏 살 수 있구나, 생각하니 정말 좋더라고요.” (아름다운재단·아동자립지원단, 2017)

## (2) 사회적 자원에 초점을 맞춘 지원

아름다운재단은 일찍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이 물질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자본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사업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생교육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참여자 팀별 모임, 네트워크 프로그램, 1:1 모니터링 등 참여 청년 간 소통과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병행해왔다. 이는 서로를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교류할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창구로도 활용되었다.

“저랑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던 것. 제 주변에는 자립에 실패한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을 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을 만난 것이 참 특별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재단·아동자립지원단, 2017)

“그동안의 외로움과 두려움은 자신만 겪는 슬픔과 아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더는 외딴섬이 아니었습니다. 장학생들과의 소통과 공감은 이내 위로와 격려로 승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재단·아동자립지원단, 2018)

## (3) 자립 역량의 강화

자립청년 선후배가 만나 모임과 활동을 함께하는 ‘작은변화 프로젝트’를 통해 자립청년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립수당과 주거지원사업, 다른 단체에서 지원하는 학비·생활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와 일상생활의 사소한 지침과 팁들을 자발적으로 공유하였다. ‘작은변화 프로젝트’는 팀별로 스스로 선정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다. 활동의 결과가 지식과 기술 습득이나 취업으로 직접 연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활동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도 했다(아름다운재단·아동자립지원단, 2017). 또한, 아름다운재단은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할 경우에도 계획과 결과 보고를 하게 하였는데, 청년들은 운용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산관리 능력을 자연스럽게 기르게 되었다(김선숙·조소연·이정애·권지성·안재진·정선욱, 2020).

## (4) 다양한 자원의 결합을 통한 실질적 자립 보장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 유지를 돕기 위한 주거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생활 지원을 병행하였다. 또한, 교통비와 독서실비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함으로써 학업 수행과 일상생활 전반에서 실질적인 안정을 도모하였다.

## 2)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범위

### (1) 지원 연령과 범위의 확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은 초창기부터 보호종료 후 자립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을 지원하는 관련 법 제도가 갖춰지기 전부터 청년기를 포괄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아름다운재단은 초기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던 장학금과 각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비진학 및 취업 준비 청년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자립준비청년이 퇴소 후 생계를 위해 진학보다는 취업을 준비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리고 보호 기간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진로 선택의 폭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법적으로 규정된 ‘자립준비청년’ 외에도 당시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시설 중도 퇴소자’와 ‘청소년복지 시설(쉼터) 퇴소자’도 포함하여 사각지대 청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는데, 이 역시 공공 영역의 정책이 개선되기 전 선도적으로 추진한 내용이다.

### (2) 청년 권리의 확장으로 관점 전환

아름다운재단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 활동, 취미 및 문화 활동도 지원하였다. 그리고 모든 과정은 청년의 관심사에 따른 선택을 존중하며 이루어졌다. 이는 생존권과 보호권 중심의 지원에서 발달권과 참여권으로 청년의 권리를 확장하여 접근한 것이었으며, 기본적 생계유지만을 강조하던 기존 사회서비스의 시각을 문화와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으로 전환한 시도였다.

## 3)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운영

### (1) 선정 기준의 융통성

아름다운재단은 등록금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발할 때도 현재의 성적보다는 사람(가능성)을 보는 선발 제도를 도입하고, 고통을 드러내기보다 희망을 발굴하려는 관점과 태도로 접근하였다. 서류 심사와 면접 등 선발 과정에서도 성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철학이 드러났으며, 이는 타 지원사업과 가장 큰 차별점으로 볼 수 있다(김선숙 외, 2020).

“아름다운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을 안 봐요. 그래서 모집 기간 동안 질문도 많이 받아요. ‘저는 성적이 안 되는데 지원해도 되냐’고요. 사실 시설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은 성적이 잘 나오기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아예 지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로 봐요. 슬픔이 아니라 희망을 보고 선발하는 거죠.” (아름다운재단·아동자립지원단, 2018)

“장학금을 받아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지원해야 할 거 같은 한데, 반대로 되게 허술하게 쓴 서류를 보면 ‘이 사람은 맨날 떨어지겠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허술하게 쓴 서류라고 해도 무슨 말을 쓰고 싶었는지 생각하면서 두 번, 세 번 다시 읽어요. 서류 내용은 부실해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수도 있거든요.” (아름다운재단·아동자립지원단, 2018)



## (2) 결과보다 과정을 강조하는 이용자 중심 실천

아름다운재단의 자립지원은 당사자의 주체성을 중요시하여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사자의 선호와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도 청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지지하였다. 대상의 선정 과정에서 성적보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듯이, 프로그램 성과 측정과 결과 보고에서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였다. 예를 들어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교육비를 지원하지만,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과정을 지지하고 응원하였다.

## (3) 나눔의 선순환

아름다운재단의 활동에 참여한 청년들은 ‘도움받던 사람에서 도움 주는 사람으로’의 전환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지원이 끝난 후에도 금전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 기부, 자신의 자립 노하우 나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자립지원사업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 6. 자립준비청년사업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 분석

### 1) 연구 개요

자립준비청년 사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그룹과 학계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초점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2023년 11월 9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각각 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는 총 8명이었다. 현장 전문가 그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아동보호치료시설, 공공기관 종사자로 총 4명이었고, 학계 전문가 그룹은 정부 출연 연구 기관과 재단법인 연구 부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자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총 4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자료의 코딩(coding), 범주화(categorization)를 포함하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 2) 연구 결과

#### (1) 현행 자립지원의 문제

##### ①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

##### 가. 보호체계 간의 차이: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자립지원 수준의 차별

현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보호체계별 자립지원 수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였다.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아동보호체계 속 자립준비청년에게 주어지는 자립지원 수준에 비해 청소년쉼터 등의 일시보호시설이나 아동보호치료시설, 사법형 그룹홈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수준에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각각의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의 상황과 자립지원의 필요도가 다르지 않음에도 단지 어느 보호체계에 속해 있느냐로 지원 수준이 달라져 이후 자립 과정에서 취약한 상황에 내몰리는 자립준비청년들을 마주하는 현장 전문가들은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

지금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이게 그리고 가정위탁 3주체에 대해서는 지금 자립에 대한 준비들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호치료시설 같은 경우나 일시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빠져 있는 부분인 거죠. (현장 전문가A)

서울 같은 경우에 내년엔 2천만 원까지 자립 정착금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쉼터로 간 청소년과 아동양육시설로 간 청소년이 이 자립하는 시기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략)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하지 않고 이걸 없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너무 어려워지고. 이게 근데 청소년 시설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부처 안에서의 이런 칸막이 정책 이런 것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좀 통합되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들거든요.

우리 센터를 퇴소하는 아이들 중에서 그리고 그룹홈 퇴소하는 아이들 저희가 법인에 있으니까 같이 볼 수 있잖아요? 일단 그래 퇴소한 아이들은 집이 딱 제공이 되고 일단 주거 공간이 이제 준비가 되다 보니까 출발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이는 살아가면서 자립하면서의 그 차이는 굉장히 꽤 급격한 개입이 생기는 거거든요. (현장 전문가B)

아직도 아동보호 치료시설에 있던 친구들을 지금 어떤 보호종료아동 대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고 (중략) 회복 지원 시설도 있어요.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회복 지원 시설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도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이면서 거기는 저희는 6호라는 처분을 받지만 거기는 1호를 받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것도 역시 보호자들이 열악하고 보호자들이 아예 안 돌보거나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현장 전문가D)

**나. 보호체계 안에서의 편차: 전담인력의 부재와 자립정보의 격차**

같은 보호체계라고 해도 자립지원 수준에 편차가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양육시설과 가정위탁의 경우 자립을 전담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지만, 공동생활가정에는 없다. 따라서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재량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와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립준비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안에서도 또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중략) 보호 중일 때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양육시설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만 있어요. 그룹홈에는 없어요. (중략) 25%에 있는 그룹홈에 있는 아동들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없이 그냥 그룹홈에 있는 시설장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 안에서 이 자립을 준비해야 돼요. (학계 전문가G)

보호시설 유형에 따라 자립정보에 대한 격차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손가족처럼 친인척 가정위탁의 경우 자립준비청년 본인이 서비스 대상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자립수당이나 교육과 서비스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시설보호아동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점도 문제로 지목되었다. 가정위탁의 특성상 아동양육시설처럼 자립관련 선후배도 없고 전담인력이 밀착해 있는 형태도 아니다보니 결국 자립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인 것이다.

저희 안에서도 사실은 보호 체계별로 또 편차가 발생을 합니다. 너무나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손가족인 가정위탁 아이들에 대한 정보 격차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제 굉장히 대책을 만나면서 아이들 한 몇백 명을 만났는데 아이들 중에 이제 제가 1억 원, 몇 년 동안 1억 원을 지원받은 경우까지도 봤어요. 근데 반면 어떤 아이들은 아무것도 의지가 없어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고 (중략) 굉장히 어렵게 사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무런 의욕이 없이 그냥 수당으로 버티는 이런 상황들도 봤고 노숙까지 가는 경우도 나와서. (현장 전문가A)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이전에는 중도 퇴소하는 청소년들도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제 중도 퇴소하는 청소년들도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근데 문제는 이제 접근성인 거죠. 후원금이 많은 애들은 막 수천만 원

단위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없는 아이들은 무슨 몇만 원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저 이게 좀 형편이 다 다양한 이 친구들 중에서도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민간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학계 전문가H)

자립지원전담기관 설립으로 공공영역에서 아동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지만, 자립지원전담기관 설립 이전에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경우 연락두절 등으로 접근 자체가 어려워 여기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전담기관에서는 지금 그전에 퇴소한 아이들은 사실은 상태를 잘 몰라요. 이 아이들이 진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지, 아니면 정말 무슨 전화를 계속 돌리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이제 가정 위탁 같은 경우... (현장 전문가A)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자립지원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 근거해 제공되기 때문에 정보에 취약하거나 심리적 어려움으로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자립지원관에서는 서비스를 요청할 때만 그 아이들에 대한 사례를 관리하고 또 지원 서비스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신청하는 한에서만 지원이 되지만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가 또 있어요. (현장 전문가B)

**다. 보호체계 밖에 있는 아이들: 탈시설, 탈가정 후 떠돌아다니는 아이들**

현장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립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은 가정이나 시설보호 밖에 있는 청소년이었다. 특히 비행, 범죄 등으로 보호처분 받은 아이들의 경우, 약 10%의 아이들은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6개월 지나 퇴소 후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비행으로 문제를 일으켜 시설을 나온 경우 본인이 돌아가길 원해도 시설에서 원치 않아서 양육시설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연령대가 16, 17인데도 불구하고, 양육시설에 있던 친구들이 본인도 양육시설로 안 돌아가겠다. 그리고 양육시설에도 절대로 안 받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중략) 그중에 1년에 한 10% 이상 지금도 5명 정도 아이들이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6개월 퇴소 후에 갈 곳이 없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현장 전문가D)

소년원 가서 6개월 혹은 9호 받아서 6개월, 1호 받아서 2년 있다가 애가 양육시설로 다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돌다가 청소년쉼터 가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계 전문가G)

청소년들이 시설에 돌아가고 싶어도 시설에서 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략) 특히 아동 저희가 만났

던 청소년들 아동 양육시설에서 이제 중도 퇴소한 청소년들이 대부분 비행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한 경우들은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쉼터로 가는 경우들이 꽤 대다수였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현장 전문가C)

때로는 본인이 시설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시설에 대한 경험이 좋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탈시설 후 시설로 복귀하려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했다. 이들이 시설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너무 어려워져서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설을 잠시라도 경험해 봤는데 모든 시설이 다 좋은 건 아니고 청소년들도 각자가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시설에서의 이런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규칙들이 청소년 한 명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사실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퇴소하는 상황들도... (현장 전문가C)

청소년들이 보호시설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쉼터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쉼터나 탈시설 이후에 다시 시설로 복귀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정말 복귀하는 경우에는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더 이상 어디도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된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장 전문가C)

자립지원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대상은 가정이나 시설보호 밖에 있는 청소년이었다. 이들은 이른 나이에 가족과의 갈등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나와 제도 안에 있는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고 있다.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된 경우 보호조치를 받아 시설이라는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지만 이런 과정 없이 집을 뛰쳐나온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이렇게 가정폭력이 있어서 애가 그냥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우리 보호 체계에서 아이를 지원을 하고 애가 그냥 집으로 뛰쳐나오면 이 아이는 그냥 아무런 지원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지원들이 이렇게 약간 편차가 발생을 하는 건가. (현장 전문가A)

사실은 어떤 아이들이 가정폭력이나 이런 게 있어서 신고되어 있거나, 분리했을 경우는 부모님이 있지만 쉼터로 갈 수 있고 그룹홈으로 갈 수 있고 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가 안 돼 있고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는 안 좋고 이런 면은 가솔 그냥 쉽게 해요. (현장 전문가D)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들은 이들의 나이가 16~17세 등으로 어리고 원가정도 이들을 감당하기엔 어렵고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했다. 특히 법원에서 범죄나 비행으로 처분 받고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의 경우 가정이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할 만한 여력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 법적인 보호자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들은 어떤 자립준비청년보다도 도움이 절실하지만 자립지원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저희들도 원가정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아이들하고 그거를 우선시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13살 14살 때 노출 돼 있고 가출하고 했는데 집으로 돌아간다. 어떤 시설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쉼터도 있을 수 있죠. 있다가 집으로 가고 이러겠죠. 그러다가 집으로 가면은 집에서 그거를 감당하느냐 아니죠. 또 그게 반복인 거죠. 그거는 13살부터 14살 오 아이들이 어떤 가출이 시작해서 노출되고 이러면 그 아이들은 열일곱 열여덟 될 때까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 돌아다니면서 어떤 이런 상황들이 되겠죠. (현장 전문가D)

이제 아동청소년기에 사실 2년 동안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나온 아이가, 부모가 이 친구를 흔쾌히 이렇게 자립지원을 할 만한 그런 보호력이 있는 가정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낙인의 대상이 되고. (학계 전문가G)

저희가 지원하는 청소년들의 연령을 봤을 때 지금 지원을 시작하는 시점의 연령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17세에 요즘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자립지원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실제로 17세 청소년이 자립지원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만 16세 청소년들의 이제 지원도 이렇게 요청이 오는데 만 16세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장 전문가C)

## ② 지원서비스 작동 메커니즘의 문제

### 가. 정책 네이밍(naming) 문제: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적용되는 대상 규정

연구 참여자들이 제기한 또 다른 문제는 자립지원 서비스 작동 방식이었다. 자립지원 서비스 대상인 자립준비청년의 정의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실제 존재하는 다수의 자립준비청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대상으로 어느 집단을 규정하려면 그것이 원래 의도하고 있는 대상을 충분히 담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립준비청년을 단순히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으로 규정하면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경우 자립준비청년이 아닌 것이 되므로 공공과 민간지원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삼성에서 희망디딤돌 만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민간이잖아요. 삼성 임직원 50억씩 만들었는데, 민간이니까 잘 몰랐어요. 민간은 그래서 정의를 그냥 국가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상이 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는 잘 모를 때의 세팅을 좀 굉장히 넓게 광범위하게 했으면, 아마 아동복지시설이든, 청소년복지시설이든, 법무부 시설이든 상관없이 그냥 말씀하신 취약 청소년 이렇게 해가지고 뭐도 사용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됐을 텐데. 돈이 들어가고 계약서가 서로 왔다갔다하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서비스 대상자가 딱 이렇게 지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정의는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국가가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는 거지. 그러면 또 여기서도 또 이렇게 되고 너무 안타까워요. (학계 전문가G)

자립준비청년과 이렇게 네이밍을 달리하다 보니 지금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역으로 보면, 이 네이밍이라는 게 매우 파괴력이 이렇게 파괴력이 대단하구나! 정책 대상을 이렇게 딱 네이밍한 순간 자원이 모이고 전달 체계가 정비되고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이런 걸 체감하면서도 딱 자립준비청년 이외의 아이들은 자립준비청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체의 공공과 민간의 지

원에서 이제 누락이 돼버리니까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학계 전문가F)

#### 나.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양산하는 까다로운 지원 조건

지원 대상이 처한 개인의 상황과 특성을 무시하고 어떤 기준을 일괄 적용해 경직된 정책을 집행할 때 정책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자립지원 서비스의 작동 방식에 관해 연구 참여자들이 지적한 또 다른 문제는 까다로운 지원 조건으로 인해 실제 자립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였다. 한 예로 쉼터에서 퇴소한 아이들의 경우 자립수당을 받기 위해서 전제되는 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워 실제 조건에 맞는 아이들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6개월을 한 쉼터에서 머물러야만 받는 조건의 경우, 자립수당을 위해 원치 않아도 계속 시설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조건은 자립준비청년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양산할 수 있다.

아시겠지만 이제 보호종료아동들에서 이 자립수당을 하니까 또 여가부도 이제 또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2년 동안 쉼터를 거주해야지만 그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1년은 한 곳에 계속 머물러야 돼. 그게 지금 우리가 하도 얘기해서 6개월로 줄었지만 그걸 저는 그거 단적으로 하나 그 비용을 보자면 이게 정말 정책 중심의 사업이지 이게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거 20년도가 서울에서 한 명 받았어요. 한 명. 서울에서는 이게 정말 자립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저는 이거 받는 아이들이 계속 우리 시청에서 연락 와요. 빨리 올려라, 올려라 2년 동안 쉼터를, 그 아이들 정말 찾기 힘들어요. (현장 전문가B)

6개월을 한 쉼터에 오래 머물러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권리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걸 받기 위해서 계속 거기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나가고 싶지만 못 나가고 이런 서비스는 좀 저는 정책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장 전문가B)

쉼터 퇴소 청소년이나 보호종료아동들이 갈 수 있지만 보호종료여야 되고 쉼터 퇴소 2년을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조건이 까다롭다는 거죠. (현장 전문가C)

저희가 노숙위기 청년지역 주거지원사업을 저희 청소년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되지 않았어요. 이 청소년이 보호중단 청소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해서 탈락이 됐는데 이런 이렇게 뭐가 지금 현재의 모습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정상에서의 애씀에 대한 인정과 노력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계속 현재의 모습만으로 이를 평가하고 지원하려고 하게 될 것 같거든요. (현장 전문가C)

#### 다. 과거에 메인 지원조건: 얼마나 어려운지 증명해보여야 지원받는 구조

민간영역 자립지원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보통 자립준비청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드러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방식을 내켜하지 않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서비스 신청 자체를 꺼리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방식은 자립준비청년이 살아온 기간 내내 이루어진 방식으로, 당사자 스스로 얼마나 힘들고 불쌍한 존재인지 강조하고 증명해 보여야 지원받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외부 펀드를 받을 때에 자소서 쓰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강조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이것으로서 어떻게 나아가겠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고 그래서 내가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자꾸 강조해 만드는 그 자소서 그런 계획서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학계 전문가G)

저희의 계속 고민은 본인이 신청해야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어려운지를 이야기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사실 그들이 살아온 기간 동안 계속해온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이 점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기 싫어지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안 하고 말지 내가 나를 더 얼마만큼 이야기해야지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냥 내가 돈 벌고 말지 내가 뭐 다른 일 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발생해서... (현장 전문가C)

### ③ 지원서비스의 한계

#### 가. 보호종료 이후로 집중된 지원

현행 자립지원 대부분이 보호종료 이후에 집중되어 있는 점 또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자립과정에서 부딪치는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는 사실 보호 중일 때부터 있었던 것인데 보호 단계에서 이 부분을 다루지 못하고, 보호종료 이후부터 지원하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립이라는 것이 일정 나이가 되었다고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보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훈련과 지원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것임을 감안할 때 자립지원은 이미 아동을 보호하고 있을 때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게 한계가 뭐냐 현재 지원의 한계가. 저는 먼저 우선 들었던 게, 보호종료 이후에 각종 지원들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의 보호 단계에서의 생활 그 다음에 보호 체계에 유입됐을 때 그 상황 이걸 고려하면 정신건강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보호 단계에 참 들여다보지를 못하고 환경을 개선해 주지 못하고 마치 이제 계속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이제 자립지원을 시작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까워서... (학계 전문가F)

저희가 딱 6개월만 아이들 취업을 시켜서 이제 하는데 방역이나 커피, 바리스타, 제과제빵, 편의점.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 날 이제 선생님 사장님들은 다 너무나 힘들다고 아주 거품을 무시더라고요. 갑자기 다음 날 연락 안 하고 그냥 안 나오고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 하고. 그래도 6개월을 버티고 좀 시간이 지냈더니 그 아이가 그 직업으로 커피를 배웠던 애들은 바리스타로 재취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 사회에서 부조를 받아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뭔가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그래도 밥벌이를 하느냐는 보호 중일 때부터 꾸준한 자립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그 보호 중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A)

#### 나. 특수한 욕구를 가진 자립준비청년 지원서비스의 미흡

개인이 가진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일반적인 자립지원을 넘어선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현행 자립지원 서비스 체계에서는 이런 자립준비청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발달장



애, 지적장애, 아스퍼거증후군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동반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개별 기관 차원에서 대응할 여력이 없으며,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얘기했다.

가장 힘든 케이스가 이제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자립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발달장애, 지적장애, 경계선 지능 이런 친구들에 대한 자립은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이 계속 저희한테로 몰려오다 보니 저희가 이거는 굉장히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기능이나 역할이 아닌 걸로 저희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여가부에서는 아무 대책이 지금 현재 없는 거고, 계속 저희한테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고. (현장 전문가B)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 경계선 아동들이더라고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배치를 받았을 때는 이제 ADHD 아동도 있고, 공격성이 심한 아이들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키우기가. 근데 그러니까 애는 그냥 좀 공부 못하는 아이. 학교 초기에는 그러다가 사춘기를 겪고 자립을 준비하고 나갈 썸이 되면, 이 경계선 아동들이 이제 큰 사고들을 좀 치신다는 거죠. 사기나 이런 데 가고, 자립정착금이나 수당, 용돈이나 후원금 다 없애고, 아니면 이 여자애들 같은 경우 갑자기 임신을 해서 나타난다던가, 이러니까 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보호 조치가 종료되는 나이가 생물학적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는 성인이 됐으니 너는 사회에 나가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야 돼. 근데 그 시점에 아이들을 내보내기는 너무나 불안하신 거죠. (현장 전문가A)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특히 불법 사금융 등에 노출되거나 다중채무에 시달리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대상임에도 발굴이 쉽지 않고, 발굴 이후에도 공적 영역에서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수당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이제 자산을 탕진하고 또 여러 부채의 다중 채무에 시달리고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제 계속 노출되면서 그다음에 별 이유 없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즘에는 불법 사금융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고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 결제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이게 부채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부채를 한꺼번에 이제 가진다든지, 이자를 못 내서 이렇게 이게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사실은 현장에 공적 영역에서는 이런 다중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개네들이 또 발굴이 또 안 되거든요. (학계 전문가F)

**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보다 개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중심의 대책**

현재 자립지원정책이 자립수당 확대 등의 경제적 지원중심으로 확장되는 것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자립지원은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서 ‘경제적, 심리적, 관계적 자립을 통합한 주체적 자립’이라고 했다. 수당지급에 의존하는 방식은 명백히 한계가 있으며, 통합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자립지원의 기반이 되는 체계와 인력 등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 제도가 자립준비청년 특히 경제적 지원 중심으로 이제 너무 확장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수당도 이제는 사후관리 5년에 맞춰서 50만 원, 지금 저희는 절대 그거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부처에. 근데 지금 이제 당정협의

에서도 일단 수당이 갑자기 또 증액이 돼서 이 이게 긍정적인 부분만 자꾸 지원이 가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문제 또 약간의 역기능적인 부분을 또 고려하지 않으면 현장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세요.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없고 대상자에게 이게 수당만 지급하는 방식인데 그게 이제 현금 지원에 있어서의 장점과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학계 전문가F)

사실 이제 저희가 경제적 지원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저희 아이들 지금보다도 더 훨씬 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부 매칭 비율이) 1대 2가 되고 내년엔 자립수당이 50이 되면 그것만 3천, 그리고 디딤씨앗 통장이 5만 원씩 15만 원씩 1년에 180 18년이면 그것도 4,3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립정착금을 2,500까지 주는 데도 있고 서울은 2천이지만 시군구 하면 2,500까지 주면 1억이 넘어가요. 아이들이 1억을 넘게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만큼 보호 체계 보호 대상 아동들의 경제적 지원이 늘어나고 이런 시스템이 갈 때는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보호대상아동, 자립준비청년 도와야 되는 거에 대한 이견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현장 전문가A)

근데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그 도움을 준다는 것이 처음에는 뭐 자기들 계획은 다 ‘알바 할래요.’ 이래서 너희들이 알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곳에서 나름대로 아이들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자격증도 따게 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뭐지 개별적으로 연계도 하면서 그 자립을 돕고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프로그램이나 생활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하지만, 이곳에서 1-2년 훈련받아서 아이들이 정말 혼자 나가서 있을 때 거기서 잘 견디냐 하면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현장 전문가D)

청소년 센터에서 자립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청소년들에게 좀 조사를 했는데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자립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 주체적 자립은 경제적, 심리적, 관계적 모든 자립을 통합한 자립인데 경제적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립이 자기들한테 너무 중요하다고 당사자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현장 전문가C)

특히 무기력하고 꿈이 없는 아이들의 자립역량을 기르도록 충분한 돌봄과 지원을 하기에 공동생활가정이나 청소년쉼터 등 현재 보호체계 안에 있는 인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자립준비청년의 곁에서 지속적인이고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안정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투자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기력하고 뭔가 변화가 없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청소년 쉼터에 있는 친구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희 지금 보호 체계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저희 시설장 간담회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들도 아동 청소년 본인들도 그렇고 뭐 하고 싶어? 몰라요. 어떤 꿈이... 꿈이 뭐예요? 이런 친구들이 사실 대부분인 이 상황에서 지금 청소년 쉼터나 보호체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과 가장 밀접하게 뭐가 주 양육자는 보호체계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금 현실이 아니잖아요. 쉼터 선생님도 지금 매번 바뀌고 있고 보호 체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룹홈도 그렇고(중략) 어쨌든 아동이 변화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아동의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 의지가 없어. 근데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옆에서 자꾸 누군가가 같이 뭘 해줘야 돼. 근데 그 옆에 누군가는 어쨌든 인력이야. 근데 우리나라의 인력은? 결론은 너무 부족해. (학계 전문가G)

## (2) 자립지원에서 중요한 것

### ① 살면서 쌓아가는 일상생활 훈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연구 참여자들은 기초적인 삶의 기술이라고 답했다.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에 있을 때도 온전한 보호나 돌봄을 받기 어렵다보니 머리 감기, 손톱 자르기, 청소하고 정리하기 등의 일상의 사소한 것들부터 새롭게 배워나가야 했다. 이러한 기술은 ‘말로 교육해서 될’ 것이 아니며 함께 살면서 하나하나 가르치며 ‘쌓아지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탈가정 이전의 삶에서 연결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들이 학대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다양한 이유로 (중략) 그 가정 안에서 온전하게 보호받고 돌봄 받았다고 생각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대한 관리도 그 이전에 가정 원가정에서 제대로 흔히 얘기하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기 굉장히 어려웠을 테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설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이전의 삶의 연속이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또 배워나가야 하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전문가C)

일상생활을 하는 이런 기술도 가르쳐야 되고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립을 해야 되는 친구들을 돕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일일이 다 데리고 살아야만 되니까 쌓여지지 않고는 그거는 말로 교육해서 될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현장 전문가D)

### ② 자립의 기초, 안전한 주거와 관찮은 일자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집이라고 연구 참여자들은 답했다. 집은 자립의 기초이며, 이후 자립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시설보호 밖에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은 일명 ‘지옥고’라고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이다. 이러한 주거 형태는 보통 사람이 살기에 부적절할 뿐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주거 비용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혼자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여튼 저는 이제 무조건 1차적으로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고민을 더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자립은 어쨌든 본인 자의든 타의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저는 집이 좀 안정적이고 안전한 거주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1차적으로 접하는 그런 거주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옥고라고 하는 지하, 옥상, 그다음에 고시원. 이 세 가지에 놓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장 전문가C)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주거라고 생각이.. 주거가 확실하나 주거가 불분명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좀 저는 가장 좀 큰 과제. (현장 전문가B)

충분한 돌봄과 보호 없이 자립을 해야만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괜찮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의 기회가 부족하다보니 단순 노동 위주의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계속 주변부 노동시장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들의 자신이 자립을 유지할 수 있는 취업 너무 중요한데 취업을 하기 위한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1차적인 노동 현장에 단순 노동 현장에 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 단계의 노동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일들 놓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C)

### ③ 관계의 힘

연구 참여자들이 자립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측면은 친밀한 관계였다. 가정외보호 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가족을 대신해 이들과 정서적 공감과 유대를 나누는 친밀한 존재는 이들이 삶을 버티고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된다. 아동보호 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 참여자는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함께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있음에도 못 견디는 이유를 ‘자신과 친한 사람이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보호시설에서 만난 친구와의 관계가 이들의 자립하는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른 연구 참여자도 가정 밖 청소년과 친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어려울 때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이들이 그곳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또 아이들이 그곳에서 장소를 대여를 해주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주고 이래도 또 좌절하고, 또 거기서조차도 또 이탈을 해요. 자립을 옆에서 돕고 있는데도. 그러니까는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계속 관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거를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 못 견디는 가장 큰 이유가 보니까는, 나하고 친한 사람이 없을 경우는 정말 힘들어하는 거야. 또래 친구들이. 그래서 옛날에 다시 범죄하고 비행하고 했을 때 그 친구들과하고 다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현장 전문가D)

사실 관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잘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과 좀 친해져야 되겠더라고요. 친해진다는 게 너무나 추상적일 수 있지만 내가 어려울 때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사실 그거부터 저희는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거든요. (현장 전문가C)

연구 참여자들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친밀한 관계 욕구 충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잘 형성되면 상담치료 등의 방식이 아니어도 많은 부분 어려움이 해소된다고 했다. 자립준비청년이 관계라는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성취와 적응행동의 증가가 뒤따른다는 것은 현장 전문가들은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사회적 관계망이 부실하고 애들이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상담이라든지 이런 접근보다는 네트워크와 관계망 속에서 이제 뭔가 해소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거든요. (학계 전문가F)

그렇지만 집을 나와 거리에서 지낸 청소년의 경우 어른들과 관계 경험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어른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이야기했다. 가정 내에서는 부모와 갈등 관계에 있었고, 가정 밖을 나와서 마주한 사회의 어른들은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기에 이들에게 어른은 신뢰할 수 없는, 더 나아가 '싫어하는' 존재인 것이다. 아이들은 주위 사람과 관계를 잘 하면서 지내는 것을 어려워했고, 그러다 보니 취업을 해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등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우선은 자존감도 낮고 자신감도 없고 해본 것도 없고 이래서 그리고 어른들을 우리 특히 000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을 싫어해요. 어른들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삶 속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여전히 계속 나는 너한테 관심 있어 너를 소중히 생각해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무한한 신뢰를 줘야 되는데 글썽요 그게 어떤 제도나 어떤 말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좋은 어른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특히 000에 있던 친구들은 좋은 어른들을 만나기보다는 자기를 이용하고 나쁘게 했던 이웃 친구들이 어른들이 많아서... (현장 전문가D)

아이들 스스로가 관계 맺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는 취업을 해도 거기서 못 견디고 또 알바를 가더라도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하면은 에이 이렇게 하고 또 약속 지키는 거 이런 것들도 소홀히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리는 아이들이 삶 속에서 서로 관계 맺는 거를 잘 가르쳐야 되고 그것들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도움을 줘야 아이들이 자립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제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 전문가D)

그렇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보호 중에 만난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앞으로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누군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지망이 시설 보호 중에서도부터 형성되어 보호종료 이후에도 지속되지 못한다면 자립은 어려울 것이라고 연구 참여자들은 얘기했다.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선생님들하고의 좋은 관계를 가지면 다음에 또 다른 성인이든 또래든 어떤 직장에서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얘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좀 청소년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들 저희는 그것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다른 지원들이 같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C)

선생님이 옆에서 누군가가 그 아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것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안 되고 이런 모습이야 그리고 어떻게 지냈니? 관심 갖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끊임없이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은 자립할 때 다 무너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장 전문가D)

### (3) 앞으로의 자립지원 방향

#### ① 사각지대 해소

##### 가. 제도가 규정하는 기준 벗어나기

연구 참여자들이 제안한 자립지원의 개선 방안 중 첫 번째는 사각지대 해소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적극 발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제도권에서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적용되는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지원 대상 규정을 탈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까다로운 지원 조건으로 있어도 작동되지 않는 서비스나 정책의 개선과 함께 제도권에서 배제된 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취약계층 청년을 돕기 위해서는 기존 틀을 벗어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좀 맞지 않  
는가... (학계 전문가H)

(청년기본법)법적인 개념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정의내리기는 좀 힘들지만 고용,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19세 이상 청년 이렇게 돼 있어요. 19세 이상 34세 이하. 그래서 이제는 아름다운재단에서 딱 ‘자립준비청  
년’이라고 이렇게 네이밍 할 수 있는 대상이 매우 극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취약  
계층 청년으로 일단 관점을 좀 전향하실 그러니까 자립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년인 거죠. (학계 전문가F)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획한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제 청년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리시면 좀 아동청소년기에  
정말 시설 경험을 했던, 시설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생활 시설이죠. 생활시설 경험이 있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좀  
지원 이렇게 좀 대상을 좀 넓혀가는 그런 것들이 좀 시도되면 좋겠다. 계속 그 얘기를 그렇게 생각을 딱 꼭 자립준  
비청년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또 대상을 좁혀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학계 전문가G)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앞서 이제 선생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이 자립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을 갖  
추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립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현  
장 전문가C)

##### 나.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 노력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에 유입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위기상황에 놓인 청년이나, 중도 퇴소한 청년, 자립지원단과 연락조차 단절된 청년들에 대한 접근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더불어 청소년부모와 같은 새로운 지원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시도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보호 기간 중간에 중단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에 발굴이 될 거라고 저 들었어요. 조금 더 나라에서 이  
제 신경을 쓸 거라고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 걸러지는 친구들은 국가에서 어떻게든 뭔가 할 수 있어요. 이게 마음



만 먹으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대상들은 시스템에서도 안 나오고요. 우리가 알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인프라에서도 컨택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홍보와 엄청 많은 다양한 정말 지역의 활동으로서밖에 이렇게 발굴이 안 되는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차라리 아름다운재단이 조금 더 활동을 하시는 게 활동도 하실 수 있고 뭔가 또 뿌듯도 하실 테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계 전문가G)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 연락 두절률이 3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공공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인데 (중략) 전담 기관에서는 1년에 한 번 전화하시고 그 때 뉴얼에 따라서 세 번까지 전화했는데도 안 받으면 일단 종결 이렇게 하는데, 민간이 만약에 그 데이터를 확보하면 계속 해보실 수 있거든요. 또는 주소지에 찾아가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와달라는 방법, 지금의 그 방법 밖에 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학계 전문가H)

요즘에 좀 뜨고 있는 대상은 청소년부모도 사실 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발굴이 안 되고 힘들다 보니까 이것도 거의 지역에서 알음알음 거의 스노우 샘플처럼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중략) 청소년 10대, 20대 아주 어린 청소년부모가 어쨌든 혼자 생활하면서 아이까지 케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학계 전문가G)

**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세밀한 접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 확장도 필요하지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집중적이고 세밀한 접근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정신적 어려움을 동반하거나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보았다.

한참 경계선 지능 말씀 많이 하시다가 현장에서 아스퍼저 증후군 그 얘기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대화도 안 되고 이게 자립지원 전담 기관에서 사례관리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2년인가 하는 그 기간 안에 이게 될 수가 없다. 결국은 여기서 끝나고 자립지원이 끝나면 다시 읍면동에서 다시 보통 수급대상 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그 체제로 그냥 넘어가는 게 그냥 눈에 다 보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아주 최소한의 것들만 국가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스페셜한 니즈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학계 전문가E)

**② 서비스 신청방식의 개선**

**가.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과정이 일반적으로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이러한 신청과정에서 이들이 처한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생각했다. 가정 내 보호아동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자립준비청년들이기에 그들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배려하며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립준비청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기존의 성과 중심의 사업보다 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는 사업이 되도록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비스는 넘쳐나는데 서비스 중심으로 대상자를 찾다 보니 청소년이 정말 뭘 원하는지, 무엇을 지원 어떤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상황들, 우리 서비스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거 지원받고 싶어요?라고 물어보지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조금 더 이전보다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인지. 사실 자립에서의 성공이라는 걸 얘기한다보다 저는 자립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의 삶이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다들 어떤 성공, 성과, 이런 것들에 좀 몰입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성과를 서비스를 얼마만큼 제공했는지 이런 것에 자꾸 저희들도 그쪽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판을 깨는 그런 작업들 좀 아름다운재단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현장 전문가C)

### 나. 미래의 가능성에 초점을 둔 지원 과정

자립준비청년 지원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제안한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드러내야만 지원 받을 수 있는 형태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자립준비청년이 원하는 것과 미래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발전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안했다.

우리는 과거에 니가 어땠는지를 보지 않고 정말 이것을 가지고 니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조금 더 발전적으로 보겠다. 약간 이런 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략)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의 너의 기회 가능성에 더 중점을 두겠다라는 것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학계 전문가G)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지원을 받았냐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 사람의 상황?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에 조금 더 중심을 두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C)

## ③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 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연결하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과정에서 중요한 힘이 되어주는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은 자립준비청년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 등 주변의 자연적인 관계를 살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지속될 때 관계가 오래갈 수 있다고 보았다. 지역사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자신이 원하는 자립선배를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했다.

피붙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남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족들이 할 수 있다면 더 좋으니까, 가족을 좀 살리는, 가족을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사업들을 그 자립준비청년을 뚝 떼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살고 있는, 그게 가족이 없으면 친구 환경이라도 같이 살려주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 환경을 같이 살려주는. 혹은 직장이면 직장인 동료들과의 관계를 살려주는. 이렇게 관계를 폭넓게 살려주는 그런 사업들을 시범으로 진행해 보시고. 그게 이제 이렇게 좀 괜찮다고 하면 각각의 영역에서 혼자 고립되지 않게끔 자신에 처한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살려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 어떨까? 그게 보통의 일상적이면서 자연스러우면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관계의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상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계 전문가E)



지금 말씀하신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꼭, 굳이, 정말 우리가 지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의 선후배, 예를 들자면 청소년 센터를 나온 누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누구든, 당신이 원하는 누군가는 매칭해 줄 수 있는 빅브라더? 시스터? 아니면 멘토링 어떤 이름을 사용하시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아름다운재단이 너무나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제한도 있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계 전문가G)

**나. 보호종료 이전부터 연속적인 관계 구축**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과정에서 중요한 힘이 되어주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지적했다. 시설 퇴소 이전부터 자립 후 자립준비청년의 관계망을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탄탄하게 관계를 쌓아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깊게 연관되고 지속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이후 지역이동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관계가 구축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관계망으로 작동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보았다.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자립은 이리이러한 건데 그것이 딱 18세, 24세 종료되는 순간이 아니라 그전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 과정 안에 녹아 있어야 되는 거고 (중략) 오랜 시간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 종료 때부터 그게 되면 더더욱 좋을 게 그리고 보통 보니까 자립준비청년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시설 보호 아동은 한 번 배치가 되고 나면 막 엄청 많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보호 종료 때는 이제 거기서 한 번 매칭이 되면 그렇게 막 지역을 넘나드는 엄청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든든한 어른이, 또는 친구가, 아니면 친인척이든, 말씀하신 그 누군가가 된다면 저는 이 애는 충분히 여기 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학계 전문가G)

이제 봉사자 중에서 우리 아이들을 좀 만나고 싶고 아이들의 상황을 좀 지원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자조 모임에 초대해서 같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허물없이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공통의 시간, 개인의 시간이 되기 전에 공동의 시간에서 그런 그 만남을 계속 이어왔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이제 그런 걸 좀 시간에 시간이 좀 필요하죠. 갑자기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아이들이 검증한 이제 신뢰를 좀 쌓았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멘토를 원하면 멘토도 해드리고 이랬던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현장 전문가B)

**다.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전문적인 접근 필요**

자립준비청년 개개인별로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등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말했다. 멘토 연결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단순히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심도 있는 욕구 파악과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관계를 주선하고 이후 관계 형성 과정에서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성장 과정을 꼭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말 멘토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았는데 아이들이 원치 않아서 많이 잘 안 됐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어른은 우리의 기준의 어른과 조금 달라요. (현장 전문가A)

말씀하신 대로 그 의미 있는 누군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서로의 욕구를 정말 되게 오랫동안 잘 파악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사실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정말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지금은 그런 세팅이 없는 거죠. (중략)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 브라더, 시스터나 멘토링 같은 거 할 때 매칭해주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고 그 자료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학계 전문가G)

현재 막 하고 있는 멘토링 방식 있잖아요? 그거는 자립 준비 청년 당사자들에게 들어보면 정말 자립전담기관에서 부탁해서 그냥 참여한 거지 자기는 너무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000 박사님 멘토링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는 성장의 과정을 꼭 같이 하는. 진짜 관계 맺기에 그 지점 그렇게 하려면 손이 정말 많이 가잖아요. 약간 사회적 가족 같은 개념. 그런 개념인 거죠. (학계 전문가F)

아름다운재단은 이 사업 담당하시는 이 한 명밖에 없거나 이래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이렇게 채길 수 있는 구조가 또 안 돼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새로 한다고 하면 담당자가 또 정말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여기도 보니까 촉진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나와서,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드시고 이렇게 한번 같이 살아가는 것들을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학계 전문가E)

#### 라. 자립선배 등 당사자 네트워크의 적극적 양성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자립선배로 양성하여 그들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연구 참여자들은 보았다. 자립준비청년끼리의 모임을 활성화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지지하는 모임을 활성화하되, 온오프라인의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런 청년들의 특성이 이제 사회적 관계망이 매우 느슨하고 부실하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관계망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런 네트워크와 관계망을 만드는 시도 굉장히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 특히 핵심은 지원을 해주고 몇 년 지원하고 이게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을 약간 키우고 양성하는 관점에서 자립선배로 키우는 관점 그러니까 약간 인재로 좀 키워나가는 같이 성장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약간 장기 계획으로 설계가 혹시 가능하시면 이제 위기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좀 지원을 하면서 이 친구들을 후배에게 또 지원을 해주는 이런 인력으로 혹시 자리가 있으면 재단에서 좀 채용도 해주시고. (학계 전문가F)

또 본인들의 또래들, 본인들의 또래에서 약간 선배들을 저희는 아이들 중에 엄마 아빠로 불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갓집을 가든 무슨 상을 당하든 무슨 좋은 일이 있던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 선배한테 그래서 지나가면서도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물어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약간은 본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약간의 선배들이 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계속 가족으로 사적인 공간에서 계속 만나고 공적인 공간에서도 계속 만나면서 정말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끼리끼리 그거를 조금 지원하는 방식의 모임들을 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희가 이제 저희는 그게 이제 바람개비 활동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 가는 게 이제 주로는 선배 집단들이 제일 효과가 많았습니다. (현장 전문가A)

#### ④ 개별 기관 차원을 넘어선 접근

연구 참여자들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이 시점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지원 단위들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초점집단 인터뷰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창구가 그동안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서나마 자립지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던 점을 의미 있게 여겼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공공뿐 아니라 민간이 함께 서로 소통하며 유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더 나아가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는 공통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제도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름다운재단에 열여덟 어른 캠페인이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열여덟 어른 캠페인 덕분에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이슈 파이팅이 돼가지고 종합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촉발하는 계기도 되고 해서 민간의 역할로서 좀 굉장하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 이슈를 확 제기하는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제도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캠페인들이 좀 기획되면 좋겠다. (학계 전문가F)

사회적인 인식이 보호 대상 아동을 바라보는 인식과 그냥 보호자가 있는 그러니까 아동을 보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보는 인식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중략) 쉼터의 청소년들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이 아이들의 지원에 대한 것들의 국민적 합의라든가 국회의원들의 관심 사회적 관심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도 어쨌든 간에 아동 입장에서 본다면 당사자 입장에서 좀 보고 그 칸막이들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원들을 좀 없애는 노력들이 공공이나 민간이나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놔두면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질 거거든요. (현장 전문가A)

## 7.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업 방향 제안

### 1) 남이 하지 않은 일, 남이 가지 않은 길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은 정착지원금과 자립수당, 기초생활수급비, 장학금, 주거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었으며, 더불어 이들은 이러한 자원이나 지원 정보가 불충분하고 불공평하게 제공된다고 하였다(박혜지·이정화, 2020; 정익중·김주현, 2019).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경제적 지원은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나 온라인 플랫폼 등의 개설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보호체계별, 보호유형별 자립지원의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다(이상정, 202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보호체계 외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자립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고, 아동보호체계 내에서도 보호유형별로 지원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쉼터와 소년원을 퇴소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으며, 이들에 대한 공적 제도가 마련되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다(정선욱 외, 2019).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현금 지원에 집중된 서비스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에서 현금지원은 필수적이며, 지원의 양과 기간을 충분하게 계획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금 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려면 교육 지원이나 심리 지원, 사회적 지원의 결합이 꼭 필요하다(정선욱, 2022). 특히, 장애가 있거나 심리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에는 이들의 자립생활 역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호체계별로, 보호유형별로 자립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일, 장애인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집중적 지원을 하는 일은 다르지 않으며, 모두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메우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이 하지 않은 일, 남이 가지 않은 길’, 민간의 역할은 어쩌면 ‘계속 새로운 일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름다운재단은 앞서 제시한 아동보호체계 외 청소년보호체계나 소년보호체계상의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체계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자립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공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서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에 관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장의 이슈를 발굴하고 가장 빠르게 개입하는 것, 그리고 문제 제기를 통해 공론화하는 일은 아름다운재단의 역할이면서 지금까지 지속해 온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재단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 2) 가족, 타인과 함께하는 자립

자립준비청년이 당면한 문제는 다양하지만, 이중 이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바로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하다는 점이며, 관계망 부족은 이들의 자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상정 외, 2019; 정선영·김연정, 2020). 이들은 자립지원기관과 같은 공적인 자원뿐 아니라, 친척이나 친구, 선후배와 같은 사적 자원망도 부족한 편이다(김연정·정선영, 2022; 이상정·김지민, 2020).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홀로 서는 법’을 배우기보다 ‘함께 사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자립에 대한 서비스는 자신의 어려움과 고립을 증명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 즉, 관계를 끊어내야만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반대편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 확장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지지체계는 단시간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노력은 보호종료 후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보호기간부터 시작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결국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며, 당연히 새로운 관계를 발굴해 연결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관계를 변화, 발전시키는 것이 수월하고 효과도 크다. 즉, 연결되고 유지되어야 할 사람은 가족부터 시작하여 친구, 동료, 이웃, 전문가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의 가족집단회의(Family Group Conference)와 에픽 오하나(Epic Ohana)의 청소년 씨클(Youth Circle) 프로그램의 강점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족집단회의는 원가정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자 등의 지지체계가 모여 아동의 보호와 가족관계의 유지와 복귀 등을 논의하는 것이다. 1980년 뉴질랜드에서는 「오랑카 타마리키 법(Oranga Tamariki Act)」과 「아동 및 청소년 복지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Well-being Act)」을 통해 이를 입법화하였다. 가족집단회의는 아동의 가족구성원을 폭넓게 확장하여 아동을 위한 결정을 함께 내릴 수 있는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가족이 아동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가족집단회의는 법적으로 지정된 전문 코디네이터가 소집하여, 이때 회의 날짜와 시간, 장소, 절차에 대해 가족과 협의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정보 제공자로 구분하며, 당사자인 아동과 부모, 보호자, 아동을 돌보는 사람, 아동의 가족구성원, 변호인, 옹호자 등은 결정권자에 포함된다. 회의는 3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아동의 어려움과 욕구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다른 전문가와 공유한다. 두 번째 단계는 가족만의 시간으로, 가족집단은 정보를 검토하고 문제를 해결할 초기 계획을 수립한다. 세 번째 단계에는 가족의 계획을 사회복지사와 전문가 집단에 제시하고, 회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한다. 코디네이터는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 결정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며, 모든 회의의 과정은 비밀이 유지되지만, 합의 결과는 서면으로 기록한다(Merkel-Holguin, Cooke, Evans, & Beck, 2020).

청소년 씨클은 하와이 보호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2003년 호주의 회복적 정의 개념을 토대로 개념화하고 실천 방식은 해결 중심 접근을 적용하여 시작되었다. 이는 보호가 종료되는 14세부터 26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자신의 욕구와 선호에 따라 자립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지지체계를 확장하고 활용하도록 한다(Epic Ohana 홈페이지, 2023.11.5. 검색). 청소년 씨클에는 청소년 당사자와 다양한 지지자들이 포함되어 활동한다. 청소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해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지지자들이 조언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력한다. 이때 이들의 강점과 성공 경험에 초점을 두며,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수정한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에는 모든 지지자가 모여 이들의 자립을 응원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다(Epic Ohana, 2021).

이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는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진로 탐색을 위한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진로 탐색 교육은 일회적인 경우가 많고, 멘토링의 경우도 학습이나 문화 체험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보호기간 중에만 진행되고, 보호종료 후까지 이어져 실질적인 자립까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자립 계획 수립 시 생활이나 학업, 취업, 주거, 건강, 지지체계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의 상황과 욕구를 다각도로 파악해야 하고,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처럼 자립 과정에 당사자의 원가족과 대리보호자, 친구 등 퇴소 후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인들을 참여시켜 퇴소 후에도 지지체계가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이상정, 2018).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욕구와 의견을 중심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멘토링 사례를 적용한다면, 보호기간부터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된 멘토를 연결하되 이러한 멘토는 원가정 복귀나 퇴소 후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아동의 원가족과 친인척, 동료, 교사 등 지역사회 인력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멘토와 멘티의 매칭은 전문적 역량을 가진 전담인력이 담당하며, 사회적 지지망의 구성과 유지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청소년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소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재단은 이 사업을 지원할 전담인력을 두고, 각

시설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교육·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각 시설 담당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전문가를 통한 교육과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3) 경계를 넘나들기

아름다운재단은 현금·현물·서비스 제공을 혼용하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지원 주체의 경계 또한 깨는 작업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공공이 하지 않은 일을 먼저 시도하는 차원, 혹은 역할 나누기를 넘어서서 공공의 정보력과 권한, 민간의 자원과 융통성을 모두 활용하는 ‘완전한 파트너십’이 요구되는 일이다. 현재, 공공과 민간의 자립지원 사업은 매우 산발적·분절적으로, 그리고 물질적 지원에만 편향되어 진행되고 있다. 공공과 민간, 그리고 민간과 민간 간의 조율과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를 논의하는 공공과 민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아름다운재단이 이러한 노력의 중심점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한다. 이 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중복되고 누락된 영역의 확인과 개선, 역할 분담, 현안에 대한 공동 이슈 파이팅 등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무엇이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데 효과적인지 지속해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자립지원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에 잘 뿌리내리고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면, 지역에서 자립청년을 돕는 기관에 대한 지원도 다각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보호종료 이후 5년이 지난 청년 가운데도 아직도 심리 정서적으로 어렵고 지지체계가 빈약한 청년들을 보살피는 지역 기관들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슈퍼비전 제공 등을 통해 실천가를 지원하는 일도 그중 한 가지일 것이다. 또한, 지원 이후 실천의 효과를 다시 공유함으로써 이 일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자립지원의 질을 높이는 데 아름다운재단이 기여하는 방법이다.

## 참고 문헌

- 강현주·홍나미·박주혜. (2019). 보호종료아동 자립역량강화사업 ‘청사진’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정몽구재단·아동권리보장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국민일보. (2022.12.4.). 끝내 극단 선택한 자립준비청년 ‘3년간 최소 13명’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7737908>
- 국회입법처. (2023). 지속가능한 자립: 자립전담지원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김범구. (2019). 가정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 자료집.
- 김선숙·조소연·이정애·권지성·안재진·정선옥. (2020).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성과연구: 경제적 지원과 사회자본의 결합효과. 아동권리보장원·아름다운재단.
- 김연정·정선영. (2022).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준비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6(1): 93-120.
- 김지연·백혜정·김미향. (2022). 2022년 시설외청소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주혜·홍나미·강현주. (2022).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자조모임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박혜지·이정화. (2020).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의 자립과정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1(1), 65-80.
-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3a). 2023년 자립지원사업안내.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3b). 2023년 자립지원활동 가이드북.
- 사회보장정보원. (2022). 자립준비청년의 복지제도 이용 유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
- 아름다운재단·아동자립지원단. (2015). 2015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활동집.
- 아름다운재단·아동자립지원단. (2017). 2017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활동집.
- 아름다운재단·아동자립지원단. (2018). 2018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활동집.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5.4.).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첫 지원”.
- 이상정. (2018). 미국의 아동자립지원제도와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7, 94101.
- 이상정. (2021).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와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1(6), 22-36.
- 이상정·김지민. (2020a). 가정외보호 자립준비대상아동의 회복탄력성과 영향 요인. 보건사회연구, 40(4), 115-148.
- 이상정·김지민·류정희·허은영·박세경·임성은·김지연·황정하. (2020b).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정·류정희·김지연·김무현·김지민. (2019).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이정민·김수혜. (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형섭·정선옥. (2016). 시설보호아동의 복지 관점에서 본 소년법상 통고제도. 한국아동복지학(56), 69-99.
- 전민경. (2021). 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경향신문. (2019.7.22.). “‘우범소년’이란 이유만으로 죄짓지 않았는데도 법정에 세워 처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72222070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7222207005).
- 정선영·김연정. (2020). 인천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준비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 아동복지연구소 보고서, 2020(6), 1-90.
- 정선옥. (2022). 아동보호체계에서 바라본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의 이슈와 과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 자료집.
- 정선옥·강현주·정익중·김진숙. (2019).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 보건복지부.
- 정익중·김주현. (2019). 가정위탁종결청소년의 자립경험. 한국가족복지학, (64), 131-163.
- 조소연·황혜신. (2023). 거리청소년 아웃리치 현장에 관한 문화기술지. 한국사회복지학, 75(3), 319-348.



- 최정규·강정은·김수정·박보희·전미아·정병수·현소혜. (2018)  
아동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국가인권위원회·사단법인 두루.
- 허민숙. (2018).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허민숙. (2022). 쉼터 밖 탈가정 청소년보호를 위한 입법과제와 해외사례. 청소년쉼터 30주년 맞이 국회토론회 자료집.
- EpicOhana 홈페이지. (2023.11.5. 검색).  
<https://www.epicohana.org/ohana-connections>.
- Epic Ohan. (2021). Youth Circle.  
<https://www.youtube.com/watch?v=lzZH6z1e9Z4>
- Merkel-Holguin, L., Cooke, A., Evans, D., & Beck, K. L. (2020). The New Zealand family group conference confidentiality protections: lessons learned and an application in US child welfare systems. Family Court Review, 58(1), 109-125.



